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항공운송사업자·정비조직·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 위험도기반 안전감독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자격증명의 갱신·효력 회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검사, 운항·정비조직 인증의 변경·갱신·검사,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제공 등 관련 제도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 관련 국제기준 및 운항기준 정비(안 제1조의2, 제109조, 제162조, 제167조, 제168조, 제171조, 제189조, 제190조, 제196조, 제199조, 제206조, 제308조, 제318조의2 및 관련 별표)

-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진로·앞지르기·예향, 통신두절, 항공기 식별·유도·착륙지시, 최저비행고도, ACAS II, 항공기 장비 등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 2)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권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구분함.

나. 항공종사자 자격·교육 및 정비 관련 안전관리 강화(안 제25조의2·제25조의3, 제34조의3·제34조의4, 제69조, 제77조, 제81조,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4조, 제104조의2·제104조의3 및 관련 별표)

-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연기·효력 회복,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시험면제 및 전자 자격증명 등 자격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갱신·검사 및 교육·시설·교관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 2) 형식·제작증명 및 항공정비사·확인정비사 관련 검사·자격관리 기준을 정비함.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및 안전데이터 관리체계 강화(안 제10조, 제130조, 제130조의3·제130조의4, 제131조, 제132조,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5조의2 등)

- 1) 항공기상·안전데이터 및 SMS 운영자가 수집·분석한 안전정보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SMS 및 통합 SMS의 승인·변경승인·검사 및 안전정책·위험관리·안전보증 등 구성요소를 구체화하며,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데이터 분석결과의 공개·배포 절차를 마련함.

라.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관리체계 정비(안 제253조, 제253조의2, 제255조 등)

- 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정기·수시검사 및 갱신·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검사·자문 참여 근거를 정하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제공·수집·품질관리 기준을 구체화함.

마.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에 대한 지속적·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강화(안 제262조의2, 제263조의2·제263조의3,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 제280조, 제281조의2 및 관련 별표)

- 1)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유효성 검사, 변경·갱신 및 시정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 2) 과거 안전감독 결과, 사고·안전장애 및 국제 항공안전평가 결과 등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자별 검사횟수와 점검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체계를 마련함.

바. 항공안전감독관 관리 및 검사체계 정비(안 제314조의2·제314조의3)

- 1) 항공안전감독관의 분야별 지정기준과 자격·경력·교육훈련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 2) 항공기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을 검사·질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함.

사. 대체안전수단 인정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안 제316조의2부터 제316조의11까지)

- 1)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안전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안전수단의 신청·위험도 평가·안전성 분석 및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 2) 안전수준의 동등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조건을 부여하며, 변경·검사·시정조치·인정 취소·효력정지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2026.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제민간항공협약과의 관계) ①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다음 각 호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한다.

1. 부속서 1, 2, 4, 5, 6, 7, 8, 11, 15, 18, 19
2. 부속서 3, 10, 12, 13, 14 관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집한 난기류, 착빙 및 윈드시어 등 기상에 관한 자료
4.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가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25조의2(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증명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의3(형식증명 등의 취소 등의 기준) 법 제20조제9항제4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제작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증명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의4(제작증명의 취소 등의 기준) 법 제22조제7항제4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5조의3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유자등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 및 자격 인정·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7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조종에 따른 비행경력: 국방부장관이 증명한 것

제8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별 업무범위와 그 업무 수행 시의 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87조제4항 중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를 “전자문서”로 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경험이 있을 것

가.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90일 이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 이 경우 제91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제91조의3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도 포함한다) 받은 모의 비행훈련장치(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라 한다)를 이용한 탑승경험도 해당 장치의 운용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법 제35조제5호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50시간 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 이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험도 해당 장치의 운용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 법 제35조제6호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 이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험도 해당 장치의 운용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라. 법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80일 이내에 60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험

마. 법 제35조제8호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제6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험

바. 법 제35조제9호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

2.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별표 6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교육훈련(법 제65조제3항 또는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포함된 교육훈련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동등하

다고 인정한 교육훈련을 말한다)을 받았을 것

3.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교관 또는 실기시험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1개 이상의 교육과정(갱신받으려는 자격증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한다)에 교관 또는 시험관으로 참여한 경향이 있을 것

② 자격증명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 서류로써 자격증명의 효력을 증빙할 수 있다. 다만, 그 유효기간은 가장 최근에 심사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경우

2.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부의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경우

⑤ 자격증명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연기신청서에 제4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 신청은 신청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⑥ 자격증명의 갱신을 연기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받아야 한다.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 또는 갱신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갱신 연기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87조의3(자격증명의 효력의 회복)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명을 갱신해야 한다.

1.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제82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해당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과목 중 항공법규만 해당한다)

2.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 제82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해당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과목 중 항공법규만 해당한다) 및 실기시험

②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후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후 지체없이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87조의4(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까지 자격증명 보유자에게 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갱신 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통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면제(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 또는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시적으로”를 “일정기간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38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89조제2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의 면제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날(항공기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제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형식한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 훈련장치로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로 비행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받으려는 형식한정 대상 항공기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형식한정을 1개(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상 보유한 사람
2. 받으려는 형식한정 대상 항공기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 2개 기종 이상에 대한 비행경력(헬리콥터의 경우 500시간 이상인 사람)
3. 받으려는 형식한정 대상 항공기와 동일한 종류의 군용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경력이 500시간 이상인 사람

제9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5(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법 제39조의4에 따른 자격증명서(국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도 인정한다)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승무원: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기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3.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을 “비사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항공신체검사 관련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의학보고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을 “의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으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3개월(다만, 1회에 한하여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제9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 없음

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단순 실수, 부지 등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상자가 이 조항에 따른 최초 취소 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1년

2.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 없음

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단순 실수, 부지 등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상자가 이 조항에 따른 최초 취소 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1년

3.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 없음

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단순 실수, 부지 등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상자가 이 조항에 따른 최초 취소 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1년

4. 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가. 시험 시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단순 소지한 경우(시험 답안 작성 등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6개월

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 6개월

다. 응시원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입된 경우: 1년

제98조제2항 중 “한다) 단독”을 “한다)이 단독”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목”을 “교육과정(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하며,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1. 교육과정, 교육평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자료, 시설, 장비(항공기, 모의훈련장치 등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를 포함한 조직체계, 교관 인원·자격·역량 등에 관한 사항

제104조의2를 제10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0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법 제48조의2”를 “법 제4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을 “법 제48조의4제1항제7호라목”으로 하며,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갱신)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의 교육규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규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갱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체계가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자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9조제1항제1호나목 중 “2007년 1월 1일”을 “2005년 11월 24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전단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을 “항공운송사업용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제2호”를 “제3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로, “탑재하여야”를 “탑재해야”로 한다.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중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해당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를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서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본문 및 법 제58조제7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작·교육·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2. 제1호에 따른 해당 국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 사본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빙 서류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 및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0조의3 및 제1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3(비행자료 수집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법 제5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비행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 또는 항공기 데이터기록시스템(ADRS; Aircraft Data Recording System)을 장착할 것
2. 항공기에서 기록된 비행자료를 지상의 처리장치로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이 경우 전송 수단은 저장매체를 통한 물리적 전송 방식 또는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송방식 등을 말한다.
3. 수집된 비행자료의 수신 및 저장, 분석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 분석 보고서 생성,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 등이 포함된 지상처리 시스템

을 운영할 것

제130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7항제1호”를 “법 제58조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직체계”를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관련 법령 등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1조제2호가목 중 “증명, 인증, 승인, 지정”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안전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제131조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에 관한 사항
제13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안전 정책·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제131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정부”를 “항공안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로,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를 “항공안전 관련 부처,”로,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의 항공당국 등”을 “자 및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로 한다.

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기능, 항공안전정책 및 목표를 항공업계 및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7항제2호”를 “법 제58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달성 목표”를 “달성목표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모니터링 및 측정”을 “측정 및 모니터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58조제1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법 제58조제11항제4호에 따른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 기준) 법 제58조제11항제2호의2에 따른 인정 기준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Safety Policy and Objectives)
2. 안전 위험 관리(Safety risk management)
3. 안전 보증(Safety assurance)
4. 안전 증진(Safety promotion)

제133조 중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를 “법 제58조제11항제3호”로 한다.

제133조의2 및 제1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제135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 분석결과의 간행물 발간) ① 법 제61조의 2제5항에 따른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분석 현황
2.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의 통계 및 추세 분석
3.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4. 항공안전감독 결과 분석
5. 그 밖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은 관계 행정기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에게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2조제3호 중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을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항공기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도록 하고”로 한다.

제167조제4항 전단 중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을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며,”로,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앞

지르기당하는”을 “앞지르기 당하는”으로 한다.

제16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앞지르기하려는 항공기는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우선 통행권이 있도록 충분히 분리되도록 진로를 변경할 것

제17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를 예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조언 또는 허가에 따라 예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자: 지방항공청장

제190조제2항 중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를 “사용 가능한 모든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 설정을 시

도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

제190조제4항제3호 중 “지역항법(RNAV)”을 “지역항법”으로 한다.

제196조의 제목 “(요격)”을 “(항공기에 대한 식별·유도 조치 등에 대한 대응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법 제67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식별·유도 또는 착륙지시 등의 조치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6 제3호에서 정하는 시각 신호, 통신절차 및 대응방식에 따라 즉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1. 식별·유도 항공기의 시각신호 또는 무선지시를 즉시 확인하고 이에 응답할 것
2.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것
3. 비상주파수 121.5메가헤르츠(MHz)를 이용(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43메가헤르츠(MHz)를 이용한다)하여 식별·유도 항공기

또는 관계기관과의 통신을 시도할 것

4. 트랜스폰더 SSR을 장착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Mode A Code 7700을 설정할 것

5.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또는 ADS-C)을 장착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비상기능을 설정할 것

6. 시각신호, 무선지시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지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을 요청하면서 식별·유도 항공기의 지시에 따라 조치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각신호, 통신절차 및 대응방식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에 따른다.

제19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8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상의 사람 또는 재산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도를 말한다.

제20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인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의 조종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사본

나.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무인항공기 조종자격 증명서 사본

다.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무인항공기 조종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219조를 삭제한다.

제253조의 제목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을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 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증명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2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3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갱신 등)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법 제8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신규, 갱신)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 운영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3.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 증명(신규,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86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255조의 제목 “(항공정보)”를 “(항공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을 “형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이 경우 수정판 및 보충판을 포함한다.
5.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

6. 디지털 데이터세트

제2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에 제공하는 사항은”을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의 종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
- 1의2.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
- 1의3.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
2. 정밀접근지형도-ICAO(Precision Approach Terrain-ICAO)
3. 항공로도-ICAO(Enroute Chart-ICAO)
4. 지역도-ICAO(Area Chart-ICAO)
5. 표준계기출발도-ICAO(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
6. 표준계기도착도-ICAO(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
7. 계기접근도-ICAO(Instrument Approach Chart-ICAO)

8. 시계접근도-ICAO(Visual Approach Chart-ICAO)
9.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Aerodrome/Heliport Chart-ICAO)
10. 비행장지상이동도-ICAO(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
11. 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ICAO(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
12. 세계항공도-ICAO 1:1,000,000(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0,000)
13. 항공도-ICAO 1:500,000(Aeronautical Chart-ICAO 1:500,000)
14. 항법도-ICAO(소축척)(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
15.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

④ 영 제20조의2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리정보원
2.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지도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자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된 항공정보·지도 자료를 제공하거나 항공정보의 발간을 요청하는 자

제25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정(Visibility): 킬로미터(km).

제255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4항”을 “법 제89조제5항”으로, “항공정보”를 “항공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수집하는 항공정보·지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규정, 규칙 및 절차
2. 비행장 및 헬기장
3. 공역
4. 항공교통서비스(ATS) 항공로
5. 계기비행절차
6. 항행안전시설
7. 장애물
8. 지형
9. 지리정보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제공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항공정보·지도 자료의 수집 양식, 속성, 품질 요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2조의2, 제263조의2, 제263조의3 및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의2(운항증명의 지속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2조의 항공안전활동으로 수집된 안전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등 긴급하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의 세부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63조의2(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유효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유효성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검사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유효성 검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3조의3(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4에 따른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험도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감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그 밖에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72조의2(정비조직인증의 변경검사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조직의 소재지 변경
2. 수행하려는 업무 범위의 추가 또는 변경
3.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nager)의 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9호의2서식의 정비조직인증 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세부 운영기준
2. 변경된 정비조직절차교범
3.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99호의2서식의 정비조직인증 변경검사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이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2조에 따라 발급한 세부 운영기준과 별지 제99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변경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72조의3(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1년마다,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2년마다 검사. 다만,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갱신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갱신검사로 정기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2. 수시검사: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7조제6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2조의4(정비조직인증의 갱신 등)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적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부품등에 대한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과 함께 별지 제99호서식의 정비조직인

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제7항”을 “법 제103조제7항 또는 법 제104조제4항”으로 한다.

제2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1조의2(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거 안전감독 결과, 항공기 사고 및 안전장애 발생 현황, 국제 항공안전평가 결과 자료 등을 수집·분석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수시검사의 횟수 및 점검 항목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수시검사의 횟수 및 점검 항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0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14조의2 및 제3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4조의2(항공안전감독관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질문 및 안전성검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안전 분야별로 항공안전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의 항공안전 분야별 자격·경력·교육훈련 및 그 밖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314조의3(검사·질문의 대상 사업장)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1. 항공기의 보관·정비·점검 또는 주기를 위한 격납고(Hangar)
2. 법 제1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시설

제31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 긴급성 및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운항·운용 또는 업무의 정지 사유
2. 정지의 범위 및 대상
3. 이행하여야 할 안전조치

4. 조치의 해제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운항·운용 또는 업무정지의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운항 또는 재운용이 가능함을 통보하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316조의2부터 제31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6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신청) ① 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4서식의 대체안전수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안전수단 적용 필요성 및 사유서
2. 적용 대상 기준 및 관련 법령 검토서
3. 대체방법·대체운영절차·대체시설 또는 장비에 관한 설명서
4. 위험도 평가서(Risk Assessment)
5. 안전성 분석서(Safety Case)
6. 위험도 경감조치 계획서

7.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서류

8. 비상대응 절차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검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전쟁, 감염병,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16조의3(위험도 평가) ① 제3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3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Hazard Identification)

2. 위험도의 분석

3. 위험도의 평가

4. 위험도 경감조치의 수립

5. 잔여 위험도(Residual Risk)의 평가

6.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 및 ICAO Doc 9859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원칙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 또

는 이를 조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6조의4(대체안전수단의 인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안전수단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 확보 여부
2. 위험도 평가 결과
3.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절성 및 실효성
4.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와의 정합성
5. 공공의 이익 및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존재 여부
7.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의 적정성
8. 국제민간항공기구 차이점 통보 필요 여부
9. 감독 가능성
10. 그 밖에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 확보 여부는 해당 기준의 안전목적 및 안전기능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법률·항공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6조의5(대체안전수단의 인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2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1. 적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3. 운영제한에 관한 사항
4. 보고의무
5. 추가적인 안전조치

③ 대체안전수단의 유효기간은 대체안전수단의 적용 필요성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에 따른 국제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한 차이점 통보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316조의6(대체안전수단의 변경) 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대체안전수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23호의5서식의 대체안전수단 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구 내용 대비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16조의7(변경보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운영환경의 중대한 변경
2. 위험 증가요인의 발생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의 발생
4. 제316조의5제2항에 따른 인정조건의 준수가 곤란한 상황의 발생

제316조의8(정기검사 등) ① 법 제132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도가 높은 경우
2.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3. 과거 검사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인정조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3.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국제기준 또는 국내 안전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제316조의9(시정조치) ① 법 제132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시정조치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316조의10(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2조의2제6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26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앞서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6조의11(기록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검사, 시정조치 및 취소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현황을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18조의2 중 “영 제26조제3항”을 “영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사업용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중 1) 라) “비행경력”을 “비행경력(최초의 야간 비행 시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동승교육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란 2)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최대 20시간”을 “최대 10시간”으

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을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10시간”으로 한다.

-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가) 기장으로서 1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7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나) 기장으로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총 5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 착륙을 포함해야 한다.
- 다) 1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 라)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야간 비행경력(최초의 야간 비행 시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동승교육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15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헬리콥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1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1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기장으로서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총 30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다)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라) 기장으로서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

3)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활공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활공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만, 비행기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 조종으로 10시간 이상의 활공 및 10회 이상의 활공 착륙경력이 있는 사람

가)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활공 및 2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2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및 2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24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2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5회 이상의 실속회복(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4)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포함한 15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급활공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비행기, 원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30회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행기, 원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15회 이상의 활공을 포함한 75회 이상의 활공경력

나) 5회 이상의 실속회복

5)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행조종경력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행선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가) 비행선 조종사로서 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및 10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다) 2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및 1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시간을 포함한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시간

라) 2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교육훈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자격 증명 한정지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중 나)(2)(가)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중 가) 및 나)의 “20시간”을 “18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별 업무범위 및 수행요건(제81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업무를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또는 정비분야의 한정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정비업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하거나 승인한 정비규정 또는 정비조직절차교범에서 구분된 세부적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2.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별 업무범위

가.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종류로 항

<u>공정비사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경우: 한정된 항공기(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또는 경량항공기(경량비행기 또는 경량헬리콥터)와 그 장비품·부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감독 및 법 제32조에 따른 감항성을 확인하는 업무</u> <u>나. 제81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전자·전기·계기 계통 및 관련 장비품·부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감독 및 감항성을 확인하는 업무</u> <u>3. 업무 수행요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및 한정을 받은 사람이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 제69조를 준용한다.</u>
--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

1. 항공종사자

가.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1) 자격증명시험

자 격 증 명 의 종 류	자격증명의 한정을 하 려는 항공 기의 종류 · 등급 또 는 업무의 종류	과목	범위
운 송 용 조 종 사	비행기· 헬리콥터 (헬리콥터 자격증명 의 학과시 험의 경우 계기비행	항공법규	<u>가. 국내항공법규(운송용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항공법규, 운항 관련 규정 및 고도계설정절 차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u> 나. 국제항공법규
		비행이론	가.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u>지식(전기, 유</u>

에 관한 범위는 제 외한다)		<u>압, 여압계통 및 자동비행조종장치 등 비행조종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헬리콥터의 동력전달계통을 포함한다)</u> 다.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u>일반 지식(장비품의 점검, 기체·시스템·엔진 정비 절차, 운용 관련 문서의 이해를 포함한 항공기 운용한계를 포함한다)</u>
	공중항법	가. 항법의 기초 및 <u>종류(장거리 비행을 위한 특수 항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u>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기능과 이용방법 다. 탑재항행장비의 원리·종류·기능과 사용방법 <u>라. 비행준비·지상운용·이륙·상승·순항·강하·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비상상황 대응절차(운항비행계획 수립과 순항제어절차, 화물 운송 절차 및 위험물 탑재 위험요소 관리, 승객 안전 브리핑 요건, 헬리콥터 외부 탑재물이 조종에 미치는 영향 및 파워상태 침하, 지면 공진, 후퇴익 실속, 동적 전복 등에 대한 안전 절차를 포함한다)</u> 마. 운송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험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항공기상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着氷)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u>지식(비행기의 경우 고고도 기상 및 제트기류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u>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 · 비상 · 긴급통신방법 및 <u>절차(통신두절 시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다)</u> 다. 항공통신에 관한 <u>일반지식(표준통신용어를 포함한다)</u>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항공법규	<u>가. 국내항공법규(사업용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항공법규, 운항 관련 규정 및 고도계설정절차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u> 나. 국제항공법규
사업용 조종사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비행이론	가.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u>지식 (헬리콥터 및 수직이착륙기의 동력전달계통, 비행선의 기체 특성을 포함한다)</u> 다.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u>일반 지식(장비품의 사용 및 점검, 기체·시스템·엔진에 대한 정비 절차, 비행교범 등 운용 관련 문서의 이해를 포함한 항공기 운용한계를 포함한다)</u>
		공중항법	가. 항법의 기초 및 종류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기능과 이용방법 다. 탑재항행장비의 원리·종류·기능과 사용방법 <u>라. 비행준비·지상운용·이륙·상승·순항·강하·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비상상황 대응절차(시계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비행계획 수립, 화물 운송 절차 및 위험물 탑재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 관리, 승객 안전 브리핑 요건, 헬리콥터 등 외부 탑재물이 조종에 미치는 영향, 헬리콥터 및 수직이착륙기의 파위 상태 침하, 지면 공진, 후퇴익 실속, 동적 전복 등에 대한 안전 절차를 포함한다)</u> 마. 사업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험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항공기상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u>절차(통신두절 시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다)</u>

			<u>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시계비행방식 운항 시 적용되는 통신절차 및 표준통신용어를 포함한다)</u>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u>가. 국내항공법규(활공기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항공규칙, 운항 관련 규정 및 고도계설정절차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u> 나. 국제항공법규
	활공기	항공법규	
		비행이론	가. 비행이론에 관한 일반지식 <u>나. 활공기의 취급법과 운항제한에 관한 지식(시계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비행계획 수립, 다양한 이륙 방법 및 절차, 위험 기상 및 후류난류 등 위험요소 회피를 포함한 비상상황 대응절차, 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 인적수행능력을 포함한다)</u> 다. 활공기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지식 라. 항공지도의 이용방법 마. 활공비행에 관련된 기상에 관한 지식
자가용 조종사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항공법규	<u>가. 국내항공법규(자가용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항공법규, 운항 관련 규정 및 고도계설정절차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u> 나. 국제항공법규
		비행이론	가.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u>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헬리콥터 및 수직이착륙기의 동력전달계통, 비행선의 기체 특성을 포함한다)</u> 다.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u>일반 지식(비행교범 등 운용 관련 문서의 이해를</u>

			<u>포함한 항공기 운용한계를 포함한다)</u>
		공중항법	가. 항법의 기초 및 종류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기능과 이용방법 다. 탑재항행장비의 원리·종류·기능과 사용 방법 <u>라. 비행준비·지상운용·이륙·상승·순항·강하·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비상상황 대응절차(시계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비행계획 수립과 위험 기상, 후류난류 및 기타 위험 요소 회피 조치를 포함하며, 헬리콥터 및 수직이착륙기의 경우 파워 상태 침하, 지면 공진, 후퇴익 실속, 동적 전복 등에 대한 안전 절차를 포함한다)</u> 마. 자가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험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항공기상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u>절차(통신 두절 시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다)</u>

			<u>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시계비행방식 운항에 적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 통신용어를 포함한다)</u>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활공기	항공법규	<u>가. 국내항공법규(활공기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항공규칙, 운항 관련 규정 및 고도계설정절차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u> 나. 국제항공법규
		공중항법	가. 비행이론에 관한 일반지식(상급활공기와 특수활공기만 해당한다) <u>나. 활공기의 취급법과 운항제한에 관한 지식(시계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비행계획 수립, 다양한 이륙 방법 및 절차, 위험 기상 및 후류난류 등 위험요소 회피를 포함한 비상상황 대응절차, 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 인적수행능력을 포함한다)</u> 다. 활공비행에 관한 기상의 개요(상급활공기와 특수활공기만 해당한다)
부 조 종 사	비행기	<u>항공법규</u>	<u>가. 국내 항공법규(운송용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절차 등을 포함한다)</u> <u>나. 국제 항공법규</u>
		<u>비행이론</u>	<u>가.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u> <u>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전기, 유압, 여압계통 및 자동비행조종장치 등 비행조종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헬리콥터의 동력전달계통을 포함한다)</u> <u>다.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u> <u>라.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u> <u>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일반 지식(장비품의 점검, 기체·시스템·엔진 정비</u>

		<u>절차, 운용 관련 문서의 이해를 포함한 항공기 운용한계를 포함한다)</u>
	<u>공중항법</u>	<u>가. 항법의 기초 및 종류(장거리 비행을 위한 특수 항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u> <u>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기능과 이용방법</u> <u>다. 탑재항행장비의 원리·종류·기능과 사용방법</u> <u>라. 비행준비·지상운용·이륙·상승·순항·강하·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비상상황 대응절차(운항비행계획 수립과 순항제어 절차, 화물 운송 절차 및 위험물 탑재 위험요소 관리, 승객 안전 브리핑 요건, 헬리콥터 외부 탑재물이 조종에 미치는 영향 및 파워상태 침하, 지면 공진, 후퇴익 실속, 동적 전복 등에 대한 안전 절차를 포함한다)</u> <u>마. 운송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u>
	<u>항공기상</u>	<u>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u> <u>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u> <u>1) 대기압과 고도측정</u> <u>2) 일기도 및 바람·구름</u> <u>3) 기단 및 전선</u> <u>4) 난기류, 착빙(着氷) 및 뇌우</u> <u>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u> <u>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u> <u>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u> <u>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u> <u>바.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비행기의 경우 고고도 기상 및 제</u>

			<u>트기류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u>
		<u>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u>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 · 비상 · 긴급통신방법 및 절차(통신두절 시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다)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표준통신용어를 포함한다)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u>항공법규(항공교통업무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u>
		공중항법	가. 지문항법 · 추측항법 · 무선항법(기압배치항법, 지역항법시스템, 자립형 및 외부참조 항법시스템, 장거리 비행을 위한 특수 항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나. 천측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다.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라. 항행안전시설의 제원 마. 항공도 해독 및 이용방법(항공기 성능 및 적재, 운항비행계획 수립, 고도계 설정절차 및 비행원리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바. 항공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u>일반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u>
항공사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통보와 천기도 해독 나. 기상통보 방식 다. 항공기상 관측에 관한 지식 라. 구름과 전선에 관한 지식 마. 그 밖에 비행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u>지식(고도측정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u>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가.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항공교통에 관한 일반지식 다. 조난 · 비상 · 긴급통신방법 및 <u>절차(일반적인</u>

			<u>통신절차 및 표준통신용어를 포함한다)</u> <u>라. 항공정보업무(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항공약어 및 출발·항로·하강·접근을 위한 계기절차 차트의 해독과 사용을 포함한다)</u>
항 공 기 관 사		<u>항공법규</u>	<u>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항공기관사의 임무와 관련된 민간항공기 운용 규정을 포함한다)</u>
		<u>항공역학</u>	<u>가. 항공역학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의 계산에 필요한 지식</u> <u>나. 항공기관사와 관련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u>
		<u>항공기체</u>	<u>항공기의 기체의 강도·구조·성능과 정비에 관한 지식(구조적 손상 및 결함의 식별, 피로수명, 방빙 및 제우 계통을 포함한다)</u>
		<u>항공발동기</u>	<u>항공기용 발동기와 계통 및 구조·성능·정비에 관한 지식(대기조건이 발동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과 항공기 연료·유탄유에 관한 지식</u>
		<u>항공장비</u>	<u>항공기 장비품의 구조·성능과 정비에 관한 지식(여압 및 공기조화, 산소, 유압 및 공기압, 화재 방지·탐지·진압 및 소화 계통을 포함한다)</u>
		<u>항공기제어</u>	<u>비행 중에 필요한 동력장치와 장비품의 제어에 관한 지식(감항성 유지 절차, 결함 보고, 비행전 점검, 급유 시 예방절차, 정상·비정상·비상 절차, 화물 및 위험물 탑재 운용절차, 무선통신절차 및 표준통신용어를 포함한다)</u>
항 공 교		항공법규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관제일반	가.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통업

통 관 제 사			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발동기·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 나. 항공로관제절차 다. 접근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마. 레이더관제절차 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항행안전시설		<u>가. 항행안전시설(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시각 지원시설을 포함한다)</u>의 종류·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지도의 해독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항공기상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u>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비정상 상황 통신 절차 및 비행 관련 안전 관행을 포함한다)</u>

			다. 항공통신에 관한 <u>일반지식(표준관제용어를 포함한다)</u>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항공정비사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항공법규	<u>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항공기의 증명 및 지속감항성 관리에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사항, 인가된 항공정비조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u>
		정비일반	가. 정비일반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의 계산 등에 관한 <u>지식(항공정비에 적용되는 기초 수학, 측정 단위, 물리 및 화학의 기초 원리와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한 결함 수정 등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u> 나. 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험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항공기체	항공기체의 강도 · 구조 · 성능과 정비에 관한 <u>지식(재료의 특성과 적용 및 체결 기법을 포함한다)</u>
		항공발동기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구조 · 성능 · 정비에 관한 지식과 항공기 연료 · 윤활유에 관한 지식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 · 성능 · 정비 및 전자 · 전기 · 계기에 관한 지식
	경량비행기 ·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을 포함한다)	항공법규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의 항공법규에서 정한 범위와 같음
		정비일반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의 정비일반에서 정한 범위와 같음
		항공기체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의 항공기체에서 정한 범위와 같음
		항공발동기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의 항공발동기에서 정한 범위와 같음
		전자 · 전기 · 계기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의 전자 · 전기 · 계기

		계기(기본)	기(기본)에서 정한 범위와 같음
	항공기	<u>항공법규</u>	<u>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항공기의 증명 및 지속감항성 관리에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사항, 인가된 항공정비조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u>
		<u>정비일반</u>	가. <u>정비일반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의 계산 등에 관한 지식(항공정비에 적용되는 기초 수학, 측정 단위, 물리 및 화학의 기초 원리와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한 결함 수정 등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u> 나. <u>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험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u>
		<u>항공기체</u>	<u>항공기의 기체와 장비품(예항장치의 착탈장치를 포함한다)의 강도·성능·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재료의 특성과 적용 및 체결 기법을 포함한다)</u>
	전자·전기·계기 분야	항공법규	<u>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항공기의 증명 및 지속감항성 관리에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사항, 인가된 항공정비조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u>
		정비일반	가. 정비일반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의 계산 등에 관한 <u>지식(항공정비에 적용되는 기초 수학, 측정 단위, 물리 및 화학의 기초 원리와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한 결함 수정 등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u> 나. 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험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전자·전기·계기(기본)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성능·정비 및 전자·전기에 관한 지식

운항관리사		전자·전기·계기(심화)	항공기용 전자·전기·계기의 구조·성능시험 · 정비와 개조에 관한 심화지식
		항공법규	항공법규(운항관리사의 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항공법규만 해당한다)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구조 및 이착륙·순항 성능에 관한 <u>지식(해당 항공기 종류에 관한 비행원리를 포함한다)</u>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연료 소비에 관한 지식 다. 중량분포의 기술원칙 라. 중량배분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마.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과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항행안전시설	가. 항행안전시설의 종류·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지도의 해독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마. 항공기의 운항관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u>바. 표준운항절차의 적용(대체비행장 선정 및 연장운항 등 비행계획 수립 절차, 컴퓨터 지원 계획 시스템의 원리, 화물 및 위험물 운송 절차, 비상절차 및 불법간섭·사보타주 대응 절차를 포함한다)</u>
		항공기상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관리에 필요한 기상 에 관한 지식
		항공통신	가. 항공통신시설의 개요, 통신조작과 시설의 운용방법 및 절차 나.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다. 항공통신 및 항공정보에 관한 지식 라.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별표 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제87조의2제1항 관련)

1. 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부조종사·항공사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

가. 지상학 교육 : 총 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별 시간은 100분의 35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항공법규(1시간) : 현행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규와 최신 국제규정 등에 관한 사항
- 2) 비행이론(1시간) : 비행원리, 항공기 성능에 관한 사항(항공사 자격증명 갱신 대상자는 미적용)
- 3) 공중항법 I (1시간) : 비행단계별 비행절차,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 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항공사 자격증명 갱신 대상자는 미적용)
- 4) 공중항법 II(1시간) : 각종 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항행안전시설의 제원, 항공도 해독 및 이용방법,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항공사 이외의 자격증명 갱신 대상자는 미적용)

5)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1시간) : 항공교통관제업무 일반, 조난·비상·긴급통신 방법 및 절차, 항공통신·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나. 실기교육 : 이륙과 착륙을 각 3회 이상 포함하여 1시간 이상(실제 이륙한 시간부터 인정한다)의 비행훈련을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수행한 경험도 인정한다.(항공사 자격증명 갱신 대상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

가. 학과 교육 : 총 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별 시간은 100분의 35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법규(1.5시간) : 현행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규와 최신 국제규정 등에 관한 사항

2) 관제일반(1.5시간) : 비행계획·항공교통관제허가 등 항공교통업무에 및 항공기 성능 등에 관한 사항

3) 항행안전시설(1시간) : 항행안전시설의 종류·성능, 공중항법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1시간) : 항공교통관제업무 일반, 조난·비상·긴급통신 방법 및 절차, 항공통신·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나. 실기교육 : 비행장관제·접근관제·지역관제업무 중 한 종류 이상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모의관제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 사용되는 모의관제훈련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항공기관사·항공정비사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

가. 학과 교육 : 총 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별 시간은 100분의 35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법규(1.5시간) : 현행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규와 최신 국제규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비일반(1.5시간) : 정비일반 이론, 항공기 중심위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체(1시간) : 항공기체의 강조·구조·성능과 정비에 관한 사항

4) 항공발동기(1시간) :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구조·성능·정비에 관한 사항

나. 실기교육 : 기체동력장치나 그 밖의 장비품의 취급·정비 및 검사방법, 항공기 탑재중량의 배분과 중심위치의 계산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정비실습을 실시한다.(항공기관사 자격증명 갱신 대상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

가. 학과 교육 : 총 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별 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항공법규(1.5시간) : 현행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규와 최신 국제규정 등에 관한 사항
- 2) 항공기(1.5시간) : 항공기 연료소비, 중량분포의 기술원칙, 최소장비목록·외형변경목록 등에 관한 사항
- 3) 항행안전시설(1시간) : 항공지도의 해독, 항공기의 운항관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4) 항공기상(1시간) : 기상일반, 항공기상 예보 및 그 밖에 운항관리에 필요한 기상지식에 관한 사항

나. 실기교육 : 기상일기도의 해독, 비행계획의 작성 등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운항관리 업무 실습을 실시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1. 자격증명시험

자격증명의 종류	면제 대상	일부면제 범위
가. 운송용 조종사	1)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나. 사업용 조종사	1)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2) <삭 제>	
다. 자가용	1)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조종사	2) <삭 제>	
라. 항공기관사	1)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 실무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2) <삭 제>	
마. 항공교통관제사	1)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삭 제>	
바. 항공정비사	1) 해당 종류 또는 정비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삭 제>	
사. 운항관리사	1) 5년 이상 운항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2) <삭 제>	
아. <삭 제>	1) <삭 제>	<삭 제>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내용

- 1) 이 별표에서 “자격등증명 취소“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 별표에서 “효력정지“란 일정기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기간의 산정

- 1)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 2)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 3)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

분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 4)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6)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5)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7)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8) 3)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제2호가목29)·31)·35)·36)의 위반행위는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 처분의 조정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를 한 항공종사자가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장애,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가. 자격증명 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호	자격등증명 취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가) 벌금 200만원 이상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다) 벌금 100만원 미만	법 제43조제1항 제2호	자격등증명 취소 효력정지 50일 효력정지 30일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 피해를 발생한 경우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호	자격등증명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호	자격등증명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

5)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제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감항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년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7)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 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8)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2	자격등증명 취소
9) 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3	자격등증명 취소
10) 법 제39조의4를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38조제5항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않	법 제43조제1항 제2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u>은 경우</u>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업무(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20), 21) 및 24)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2)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u>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가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u> 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8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3)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4)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3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5)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6)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7)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1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입	법 제43조제1항 제11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u>과한 항공종사자가 탑재용항공일 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u>		<u>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u>
<u>19)</u>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 비행·야간비행 또는 법 제44조제 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 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u>20)</u>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 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3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u>21)</u>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4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u>22)</u>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15호	자격증명 취소
<u>23)</u>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나)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5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u>24)</u>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나)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6호	1 1차 위반: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75일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u>25)</u> 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법 제43조제1항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 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 료 확인의 의무 나) 여객구조 등의 의무 다)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사고 또 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의 보고 의무	제1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6) 조종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운항 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않 고 운항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8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7)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 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 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 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28)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 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 나 착륙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29)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1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30) 법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에 즉시 응하지 아니한 경우</u>	법 제43조제1항 <u>제21호의2</u>	<u>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u> <u>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u> <u>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u>
31)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32)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를 받지 않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3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33)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4)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6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정지 150일
35)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7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36)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8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37)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38)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9)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법 제43조제1항 제30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40)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1호	자격등증명 취소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 제1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2) 법 제39조의4의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 제2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제3항 제3호	효력정지 30일 이상
4)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5), 6) 및 7)에서 같다)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항공업무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 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5)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 제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6)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 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7)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8)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 검사증명 취소
9)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

별표 10의2 제2호가목9) 및 제2호나목6)의 처분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u>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u>
<u>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u>
<u>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u>

<u>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u>
<u>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u>
<u>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u>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

1. 자가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 아. (현행과 같음)
2.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 아. (현행과 같음)
3. 부조종사(MPL: Multi-crew Pilot Licence) 과정 지정기준
가. ~ 아. (현행과 같음)

3의2. 운송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일반

- 1)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운송용항공기(수송류 비행기)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 2) 전문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송용 조종사과정을

별도로 인가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나. 교육과목 및 교육 방법

1) 학과교육: 학과 요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과 요목의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특정 항공기의 형식 한정 과정과 해당 과정을 병행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은 별표 12 제5호가목1)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운항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과정과 중복되는 학과 요목은 상호 교차하여 인정할 수 있다.

<u>학과 요목</u>	<u>교육시간</u>
<u>1. 항공법규</u> <u>가. 운송용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u> <u>나. 항공규칙 (ANNEX 2 Rule of the Air)</u> <u>다.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ATS) 및 절차</u>	<u>2</u>
<u>2. 운송용항공기 일반 지식 및 특성</u> <u>가. 전기, 유압, 여압 등 항공기 시스템 일반 특성 및 한계, 비행 조종시스템, 자동화(자동조종장치) 및 안전성증강장치를 포함한 비행제어 시스템</u> <u>나. 항공기 발동기의 작동원리 및 한계, 대기 조건이 발동기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u> <u>다. 대기 조건이 항공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u> <u>라.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식별 및 실무 운용 능력</u> <u>마. 비행계기: 나침반, 선회 및 가속도 오차, 자이로스코프 계기, 작동한계 및 세차운동효과, 비행계기 및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오작동시 대처 방법 및 절차</u> <u>바. 항공기 기체, 시스템, 발동기에 대한 점검 절차</u>	<u>2</u>
<u>3. 운송용항공기 비행성능, 비행계획 및 탑재 균형</u> <u>가. 탑재 균형이 항공기 조종, 비행특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질량 및 균형 산출</u> <u>나. 운송용항공기 이착륙 성능 산출 및 적용 (순항 제어 절차 포함)</u>	<u>2</u>

<u>다. 운항비행계획서,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항공교통서비스 절차, 고도계 설정절차</u>	
<u>4. 인적 능력/역량</u> <u>가. 위협 및 오류 관리(TEM) 원리 및 인적 능력 (지침서: 국제 민간항공기구 문서 9683)</u> <u>나.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을 포함한 위기관리 역량</u> <u>다. 리더십 및 전문성 개발, 승무원 자원관리(CRM)</u> <u>라. 안전관리시스템(SMS)</u>	4
<u>5. 항공기상학</u> <u>가. 항공기상보고(국제기상보고형식 GRF, SNOWTAM, RCA M), 기상 차트·예보 해석 및 적용, 부호 및 약어, 비행 전(Pre-flight) 및 비행 중(In-flight) 기상 정보의 획득 절차와 활용, 고도측정법(Altimetry: 전이고도, QNH/QNE 전환, 저온 고도보정 등)</u> <u>나. 항공기상학: 항공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 기압계의 이동; 전선의 구조;이륙·순항·착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상 현상의 발생 원인 및 특성</u> <u>다. 착빙의 원인·인식 및 영향, 전선대 진입절차, 위험기상(윈드시어, 마이크로버스트 등) 인식 및 회피</u> <u>라. 고고도 기상학: 기상보고, 기상 차트 및 예보의 해석, 제트 기류</u> <u>마. 항공기 기상감지시스템 (기상 레이더, PWS), 지상 제방빙 절차</u>	3
<u>6. 항법(Navigation)</u> <u>가. 항공지도, 무선항법보조시설 및 지역항법(RNAV) 시스템 사용,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특정 항법 요건</u> <u>나. 항공기 조종 및 항법에 필요한 항공전자장비 및 계기의 사용, 제한사항 등</u> <u>다. 비행 출발, 향로, 접근 및 착륙 단계에서 사용되는 항법 시스템의 사용, 정확성 및 신뢰성, 무선 항법 보조 장치의 식별</u> <u>라. 자체 독립형(Self-contained) 및 외부 참조형(External-refe</u>	2

<u>renced) 항법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특성, 그리고 항공기 탑재 장비의 실무 조작 능력</u> <u>마. 항법 및 비행경로 경고 시스템</u>	
<u>7. 운항절차</u> <u>가. 생리학 (피로관리, 임무적합 신체조건)</u> <u>나. 운항통제, 최소장비목록(MEL)/외형결합목록(CDL)</u> <u>다. 위협 및 오류 관리 (TEM) (지침 - ICAO DOC 9868, 9683)</u> <u>라. AIP, NOTAM, 항공 코드 및 약어 등 항공 문서 해석 및 사용</u> <u>마. 예방 및 비상 절차, 안전 수칙, 조종업무 집중 정책 (Sterile Cockpit Policy)</u> <u>바. 화물 및 위험물 운송 운영 절차 (잠재적 위험)</u> <u>사.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을 포함한 승객 안전 브리핑 요건</u>	10.5
<u>8. 비행원리 및 항공역학</u> <u>가. 고고도 운항 항공역학</u> <u>나. 낮은 에너지 상태, 좁은 운영마진, 스톨(Stall) 예방 및 회복</u> <u>다. 정상 및 비정상 비행 조건에서 항공기의 비행 특성 및 성과 관련된 항공역학</u> <u>라. 비정상자세 방지 및 회복 (UPRT)</u>	8
<u>9. 무선통화</u> <u>가. 계기비행규칙 (IFR) 통신 절차 및 용어</u> <u>나. 통신장애 발생 시 절차 등</u>	1
<u>10. 계기비행</u> <u>가. RNP 출항, RNP AR 출항</u> <u>나. 3차원 접근 (3D Approach)</u> <u>1) 정밀접근 (ILS, GLS(GBAS), SBAS CAT I)</u> <u>2) 수직유도방식 접근 (APV: Approach with Vertical Guidance): RNP 접근 (Baro VNAV, SBAS VNAV), RNP AR 접근</u> <u>다. 2차원 접근 (2D Approach)</u>	2

1) 비정밀접근 (VOR/DME, GNSS(ABAS) RNP, SBAS RNP)	
11. 학과 평가	3.5
계	40

2) 실기교육

가) 실기 요목의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실기 요목별로 지정된 비행훈련 장치(FTD) 또는 모의비행장치(FFS)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실기 요목별 실기훈련시간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학과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학과 평가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모의비행장치(FFS) 훈련은 훈련목적에 따라 기동(Maneuver) 및 시나리오 기반으로 훈련하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다인승무 조종사(Multi-Crew Pilot) 운항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에는 조종사 무능력 상황(Pilot incapacitation)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항공기 형식한정 과정과 운송용 조종사 과정을 병행하는 경우, 비행훈련장치(FTD) 실기교육 8시간(다만, 항공기 형식한정 학과과정에서 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항공기 조종실 절차훈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송용 조종사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과 모의비행장치(FFS) 실기교육 26시간(평가포함) 이상 또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에서 정한 실기교육 과목 및 시간에 따라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마)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초기 비행훈련과 운송용 조종사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상호 교차하여 인정할 수 있고, 실기평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훈련장치	실기 요목	실기 훈련시간
비행훈련장치 (FTD)	항공기 조종실 절차훈련 (Cockpit Procedures Training) 가. 비행절차 나. 비행관리시스템(FMS)를 포함한 항법 다. 자동비행을 포함한 자동화	8

<u>모의비행장치 (FFS)</u>	<u>1. 비행전 준비 (Preflight Preparation)</u> <u>가. 시스템 작동 (Operation of Systems)</u> <u>나. 성능 및 제한 (Performance and Limitations)</u> <u>다. 기상 정보 (Weather Information)</u> <u>라. 고고도 항공역학 (High-Altitude Aerodynamics)</u> <u>마. 항공사 운항 (Air Operator Operations)</u> <u>바. 인적요인 (Human Factors)</u> <u>사. 항공법률(Air Law)</u> <u>2. 비행전 절차 (Preflight Procedures)</u> <u>가. 비행전 평가 (Preflight Assessment)</u> <u>나. 발동기 시동 (Powerplant Start)</u> <u>다. 지상활주/지상이동 (Taxiing)</u> <u>라. 이륙전 점검 (Before Takeoff Checks)</u> <u>3. 이륙 및 착륙 (Takeoffs and Landings)</u> <u>가. 정상 이륙 및 상승 (Normal Takeoff and Climb)</u> <u>나. 정상 접근 및 착륙 (Normal Approach and Landing)</u> <u>다. 이륙 단념 (Rejected Takeoff)</u> <u>라. 복행/착륙단념 (Go-Around/Rejected Landing)</u> <u>4. 비행 중 기동 (In-flight Maneuvers)</u> <u>가. 급선회 (Steep Turns)</u> <u>나. 비정상 자세로부터 회복 (Recovery from Unusual Flight Attitudes)</u> <u>다. 특정 비행 특성 (Specific Flight Characteristics)</u> <u>5. 스톨 예방 (Stall Prevention)</u> <u>가. 일부 플랩 형태 스톨 예방 (Partial Flap Configuration Stall Prevention)</u> <u>나. 순항 형태 스톨 예방 (Clean Configuration Stall Prevention)</u>	<u>6</u>
----------------------------	---	-----------------

	<u>다. 착륙 형태 스톨 예방 (Landing Configuration Stall Prevention)</u>	
	<u>6. 계기비행 절차 (Instrument Procedures)</u> <u>가. 계기이륙 (Instrument Takeoff)</u> <u>나. 출발절차 (Departure Procedures)</u> <u>다. 도착절차 (Arrival Procedures)</u> <u>라. 비정밀접근 (Non-precision Approaches)</u> <u>마. 수직유도접근 (APV: Approach with Vertical Guidance)</u> <u>바. 정밀접근 (Precision Approaches)</u> <u>사. 정밀접근 착륙 (Landing from a Precision Approach)</u> <u>아. 선회접근 (Circling Approach)</u> <u>자. 선회접근 착륙 (Landing from a Circling Approach)</u> <u>차. 실패접근 (Missed Approaches)</u> <u>카. 체공절차 (Holding Procedures)</u>	
	<u>7. 비상운항 (Emergency Operations)</u> <u>가. 비상절차 (Emergency Procedures)</u> <u>나. 이륙 중 발동기 고장 (Powerplant Failure During Takeoff)</u> <u>다. 비행중 발동기 고장 및 재시동 (Inflight Powerplant(s) Failure and Restart)</u> <u>라. 발동기 고장 접근 및 착륙 (모의) (Approach and Landing with a Powerplant Failure (Simulated))</u> <u>마. 발동기 고장(모의) 정밀접근 (수동 비행) (Precision Approach (Manually Flown) with a Powerplant Failure (Simulated))</u> <u>바. 플랩 미사용 또는 비표준 플랩 접근 착륙 (Landing from a No Flap or a Nonstandard Flap Approach)</u>	

	<u>oach)</u>	
	8. 비행 후 절차 (Postflight Procedures)	
	가. 착륙 후, 주기 및 비행종료 안전조치 (After Landing, Parking, and Securing)	
	9. 실기평가	2
계		16

※ 비교: 다인승무원 협조 (Multi-crew Cooperation) 기반의 절차훈련을 위해 PF (Pilot Flying) 및 PM(Pilot Monitoring) 훈련시간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모의비행장치(FFS) 실기훈련시간은 PF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교관 확보 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가)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운송용 조종사 자격과 해당 기종의 형식 한정 자격을 소지한 자

(나) 항공운송용조종사 자격을 소유한 자로 항공분야 경험 5년 이상인 자

(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으로서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

(라) 해당 교육과목과 관련된 항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다만, 항공생리 등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나) 운영기준

학과 교관의 강의는 1주당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실기 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평가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모의비행장치 실기 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은 해당 과정의 실기교육에 필요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과 해당 항공기 형식의 한정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운송용 항공기 기장으로 총 비행시간 1,000시간 또는 해 기종 기장으로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을 것

(3)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의 경우 아래에서 정한 교관훈련을 이수할 것

(가) 모의비행장치의 조종계통과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

(나) 주변판넬과 경고판넬의 적합한 운용

(다) 모의비행에 있어서의 제한사항

(라) 최소장비목록(MEL) 및 모의비행장치 충실도(Fidelity) 정책

나) 운영기준

모의비행장치 실기 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교육 평가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모의비행장치 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모의비행장치 실기평가관

가) 자격요건

(1) 25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해당 과정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실기평가에 필요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형식(운송용 조종사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

(나)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에 탑승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2조에 따른 지식심사와 기량심사를 이수한 자

(다) 최근 2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운영기준

(1) 필요시 모의비행장치 실기평가관은 학과교관 및 모의비행장치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책임관리자는 모의비행장치 실기평가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모의비행장치 실기평가관은 자신이 실기교육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라.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모의비행장치 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제9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정되고 유지·관리되도록 할 것. 다만, 운송용조종사 실기교육을 위한 훈련장치는 별표7의2에 따른 모의비행장치(FFS) C 또는 D등급 장비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하여 사용할 것 (다만,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은 이 규정 개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등급 이상의 모의비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교육평가방법

1) 학과평가

가) 학과교육에 대한 평가는 1회 이상 실시할 것

나) 학과평가 범위는 제3호 나목 1) 학과교육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다) 평가 합격 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2) 실기평가

가) 실기교육에 대한 평가는 1회 이상 실시할 것

나) 실기평가는 필기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사.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

4) 교육목표 및 목적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8)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9) 평가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10) 평가 방법 및 기준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전문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아. 역량기반 훈련 및 평가(CBTA: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를 할 것

1) 실기교육 종료시점에 최종역량(Final Competency) 기준 및 업무수행기준(Performance Criteria)을 적용하여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하여 수료 여부를 결정할 것

2) 총괄평가 이외의 초기 진단평가(Diagnostic Assessment) 또는 훈련 진행 중 역량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역량(Interim Competency) 기준을 적용할 것.

3) 총괄평가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경우에는 교정교육(Remedial Training) 및 재평가 정책과 그 횟수를 수립하여 그 정책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것

자. 수료: 운송용조종사 교육과정을 제공한 교육기관은 해당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할 것

4. 조종사 등급 한정 과정 지정기준

가. ~ 바. (현행과 같음)

5. 조종사 형식 한정 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1) 학과교육: -----, 총교육시간은 터보제트 및 터보팬 항공기는 120시간, 터보프롭 항공기는 80시간, 왕복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는 64시간 -----.

과목	발동기 종류별 교육시간		
	터보제트 /팬	터보프롭	왕복
1.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구조, 동력장치, 장비, 성능, 운용제한 및 중량배분 등 포함)	96	62	48
2. 해당 항공기 조종실 절차훈련(CPT, Cockpit Procedure Training)	20	14	12
3. 시험(중간시험을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4	4
계	120	80	64

※ 비고: 항공기 제작사에서 정한 학과교육 과목 및 시간에 따라 과정을 운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실기교육: 과목별 배분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비행기의 경우 D등급 모의비행장치(FFS)를 이용한 모의비행훈련 20시간 이상 및 실제비행으로 이륙 및 착륙을 각각 6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인가 받은 무비행시간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비행 훈련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한 D등급 모의비행장치(FFS)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분	과목	발동기 종류별 동승비행시간	
		터보제트/팬/ 프롭	왕복
비행기	1. 모의비행훈련	20	16
	2. 실제비행훈련	이·착륙 6회	이·착륙 6회
	3.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2
	계	22시간, 이·착륙 6회	18시간, 이·착륙 6회
헬리콥터	1. 모의비행훈련	15	
	2. 실제비행훈련	5	
	3.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계	22	

※ 비고: 항공기 제작사에서 정한 실기교육 과목 및 시간에 따라 과정을 운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나) (현행과 같음)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항공기 형식 한정 과정과 관련된 조종사 자격증명,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 증명(운송용 조종사는 제외한다) 및 해당 항공기 형식한정을 보유할 것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나) 운영기준

- (1) · (2)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5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해당 형식의 항공기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하여 1,500시간 이상의 총비행경력이 있을 것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다) <삭 제>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 (1) ~ (3) (현행과 같음)
다. ~ 사. (현행과 같음)

6. 계기비행증명과정 지정기준

가. ~ 사. (현행과 같음)

7. 조종교육증명과정 지정기준

가. ~ 사. (현행과 같음)

8. 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

가. ~ 사. (현행과 같음)

8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

가. 초기 교육훈련 과정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가)·나) (현행과 같음)
2) 교관 확보기준

가) 학과교관

(1) 자격요건

(가) 다음 사항에 관한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① 훈련준비(3시간): 해당 관제시설 자격·한정과정 개요, 훈련 교안 및 교육 콘텐츠·규정, 관제사 CBTA를 위한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 수요 분석, 훈련커리큘럼 개발방법

② 관찰기법(3시간): 훈련 전 브리핑 기법, 훈련대상 모니터링 기법, 피드백, 디브리핑 기법

③ 평가기법(3시간): 평가방식, 피드백 제공법, 결과보고서 작성법

④ 인적요인(2시간): 교수법·학습법, 팀간·팀내 의사소통법, 관제사 상황인식체계, 훈련대상 동기부여, 관제사 스트레스 및 피로관리

⑤ 실습(5시간): 현장 실습, 자가진단 및 동료 평가

(나) (현행과 같음)

(2) 운영기준

(가)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 ①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 ② 교수법
- ③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 ④ 훈련절차

나) 한정과정 실기교관(모의관제장비 교관)

(1) 자격요건

(가) 해당 한정과정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교통량, 혼잡도 및 관할 비행장·공역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 경력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다음 사항에 관한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① 훈련준비(3시간): 해당 관제시설 자격·한정과정 개요, 훈련 교안 및 교육 콘텐츠·규정, 관제사 CBTA를 위한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 수요 분석, 훈련커리큘럼 개발방법

② 관찰기법(3시간): 훈련 전 브리핑 기법, 훈련대상 모니터링 기법, 피드백, 디브리핑 기법

③ 평가기법(3시간): 평가방식, 피드백 제공법, 결과보고서 작성법

④ 인적요인(2시간): 교수법·학습법, 팀간·팀내 의사소통법, 관제사 상 황인식체계, 훈련대상 동기부여, 관제사 스트레스 및 피로관리

⑤ 실습(5시간): 실무교육 현장 실습, 자가진단 및 동료 평가

(다)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운영기준

(가)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다)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①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② 교수법

③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④ 훈련절차

다)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할 것

라) 초기교육 훈련팀장

(1) 자격요건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교통량, 혼잡도 및 관할 비행장·공역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 경력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학과교관 및 한정과정 실기교관(모의관제장비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운영기준: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가)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나) 교수법

(다)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라) 훈련절차

3) ~ 8) (현행과 같음)

나. 직무교육훈련 과정

1) · 2) (현행과 같음)

3) 교관 확보기준

가) 학과교관

(1) 자격요건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을 것

(나) 다음 사항에 관한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① 훈련준비(3시간): 해당관제시설 자격 · 한정과정 개요, 훈련 교안 및 교육 콘텐츠 · 규정, 관제사 CBTA를 위한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 수요 분석, 훈련커리큘럼 개발방법

② 관찰기법(3시간): 훈련 전 브리핑 기법, 훈련대상 모니터링 기법, 피드백, 디브리핑 기법

③ 평가기법(3시간): 평가방식, 피드백 제공법, 결과보고서 작성법

④ 인적요인(2시간): 교수법 · 학습법, 팀간·팀내 의사소통법, 관제사 상황인식체계, 훈련대상 동기부여, 관제사 스트레스 및 피로관리

⑤ 실습(5시간): 학과교육 현장 실습, 자가진단 및 동료 평가

(2) 운영기준

(가)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①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② 교수법

- ③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 ④ 훈련절차

나) 실무교관

(1) 자격요건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그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교통량, 혼잡도 및 관할 비행장·공역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 경력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다음 사항에 관한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① 훈련준비(3시간): 해당 관제시설 자격·한정과정 개요, 훈련 교안 및 교육 콘텐츠·규정, 관제사 CBTA를 위한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 수요 분석, 훈련커리큘럼 개발방법
- ② 관찰기법(3시간): 훈련 전 브리핑 기법, 훈련대상 모니터링 기법, 피드백, 디브리핑 기법
- ③ 평가기법(3시간): 평가방식, 피드백 제공법, 결과보고서 작성법
- ④ 인적요인(2시간): 교수법·학습법, 팀간·팀내 의사소통법, 관제사 상황인식체계, 훈련대상 동기부여, 관제사 스트레스 및 피로관리
- ⑤ 실습(5시간): 실무교육 현장 실습, 자가진단 및 동료 평가

(2) 운영기준

(가)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3명 이하로 할 것

(다)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 ①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 ② 교수법
- ③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 ④ 훈련절차

다) 심사관

(1)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사관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교통량, 혼잡도 및 관할 비행장·공역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등
을 실시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그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무교관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을 것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고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다)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①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점검 개요(1시간): 관제시설 자격·한정
의 개요, 심사관의 책임과 권한, 관제사 CBTA를 위한 기본역량 목표
이해, 한정심사·업무수행능력 점검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중점 심사
항목에 대한 수요분석

② 최신 제반지식(4시간): ICAO 부속서11, 항공안전법령, 항공교통관
제업무에 관한 절차, 항공교통업무관련 행정규칙

③ 평가기법(6시간): 평가방식,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에 대
한 사전브리핑/질문/기록/디브리핑 기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④ 후속조치(2시간): 심사대상 보완필요사항 및 보완전략 구성, 합격
자/불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

⑤ 실습(5시간): 심사 등 현장 실습, 자가진단 및 동료 평가

(2) 운영기준: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가)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에 대한 기본원리

(나) 심사 및 평가기법

(다)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라) 심사 및 평가절차

라) 직무교육 훈련팀장

(1) 자격요건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그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심사관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을 것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고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다) (가) 및 (나)의 자격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교통량, 혼잡도 및 관할 비행장·공역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운영기준: 운영기준: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가) 학습과정,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에 대한 기본원리

(나) 교수법, 심사 및 평가기법

(다)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라) 훈련, 심사 및 평가절차

마) 모의관제장비 훈련교관

(1) 자격요건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그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무교관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을 것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2) 운영기준: 매년 6시간 이상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을 것

(가)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나) 교수법 및 모의관제장비 운영방법

(다)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라) 훈련절차

바)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을 소지할 것

4) ~ 9) (현행과 같음)

9.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가. ~ 사. (현행과 같음)

10.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 바. (현행과 같음)

11. 삭제 <2018. 3. 23.>

12. 운항관리사과정 지정기준

가. ~ 사. (현행과 같음)

13. 객실승무원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1) 학과교육: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6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항공법규 및 직무기초	국제·국내항공법, 운항기술기준, 객실승무원의 법적지위와 안전책임, 항공영어, 항공기 운항 기초	8
정상운항 절차	승객 탑승 전·후 안전점검, 브리핑, 좌석·수하 물·비상규열 관리, 객실통신, 이·착륙 전 안전확 인, 표준 신호체계	6
비정상·비상절차	비상탈출, 비상착수, 감압, 화재·연기, 난기류, 승무원 무력화, 비상착륙 준비, 승객통제·군중 관리, 탈출 후 집결 절차	10
기종별 훈련	항공기 형식별 객실구조, 출입문·비상구, 슬라이드·슬라이드레프트, 객실시스템, 승무원 좌 석·담당구역, 비상장비 위치 및 사용법	4
비상·구명장비	소화기, 보호호흡장비(PBE), 산소장비, 구명복,	8

<u>운용</u>	구명정·슬라이드래프트, 메가폰, 비상신호장비, 방염백 등 탑재장비 사용법	
<u>위험물 관리</u>	객실 내 위험물 식별, 반입금지 품목, 리튬배터리 등 기내 위험물 사고 초기대응, 보고 및 격리 절차	<u>4</u>
<u>항공보안</u>	불법방해행위, 기내난동, 조종실 보안, 폭발물·폭발의심물품, 보안위협 등의 보고 및 운항승무원 협업 절차	<u>6</u>
<u>CRM 및 인적요인</u>	의사소통, 리더십·팀워크, 상황인식, 인사결정, 위협 및 오류관리(TEM),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관 협조, 승객관리 역량	<u>8</u>
<u>응급처치 및 의료훈련</u>	기내 응급환자 평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의료장비, 감염관리, 의사호출·의료자문 절차	<u>4</u>
<u>안전관리(SMS) 및 피로관리</u>	위해요인 식별·보고, 안전정보 공유, 사고·준사고 사례 학습, 객실 피로위험 및 자기관리	<u>4</u>
<u>시험</u>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u>3</u>
<u>계</u>		<u>65</u>

2) 실기교육: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 교육시간은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u>과목</u>	<u>교육 내용</u>	<u>교육시간</u>
<u>비정상·비상절차</u>	비상탈출, 비상착수, 감압, 화재·연기, 난기류, 승무원 무력화, 비상착륙 준비, 승객통제·군중관리, 탈출 후 집결 절차	<u>12</u>
<u>기종별 훈련</u>	항공기 형식별 객실구조, 출입문·비상구, 슬라이드·슬라이드래프트, 객실시스템, 승무원 좌석·담당구역, 비상장비 위치 및 사용법	<u>6</u>
<u>비상·구명장비 운용</u>	소화기, 보호호흡장비(PBE), 산소장비, 구명복, 구명정·슬라이드래프트, 메가폰, 비상신호장비, 방염백 등 탑재장비 사용법	<u>8</u>
<u>응급처치 및 의료훈련</u>	기내 응급환자 평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의료장비, 감염관리, 의사호출·의료자문 절차	<u>8</u>
<u>시험</u>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u>2</u>

<u>계</u>	<u>36</u>
----------	-----------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18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 등은 다음과 같다.

<u>과목</u>	<u>자격증명 등</u>
<u>항공법규 및 직무기초</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u>정상운항 절차</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u>비정상·비상절차</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u>기종별 훈련</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u>비상·구명장비 운용</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소방·구조·객실안전 등을 전공하였거나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u>위험물 관리</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위험물 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이 2년 이상인 사람
<u>항공보안</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항공보안을 전공하였거나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u>CRM 및 인적요인</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

	학을 전공하고 인적수행능력 과정을 이수한 사람(항공우주의료 분야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u>응급처치 및 의료훈련</u>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u>안전관리(SMS) 및 피로관리</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안전관리(SMS) 및 피로관리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일당 7시간, 1주당 5일 또는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 (2) 학과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이 20명 이하일 것. 다만, CBT 기반의 학과교육을 실시 할 경우에는 30명 이하로 할 수 있다.

2) 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 (1) 18세 이상일 것
- (2)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대한 2년 이상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나) 운영기준

- (1) 실기교관의 강의는 1일당 7시간, 1주당 5일 또는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 (2) 실기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이 10명 이하일 것

3) 주임교관

가) 23세 이상일 것

나) 학과 또는 실기교관의 자격을 갖추고, 객실승무원 업무 경력 2년 이상과 객실승무원 학과·실기 교관 경력 3년 이상을 포함한 총 5년 이상의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실무경력을 갖출 것

다)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 주임교관 및 실기 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심사관

가) 자격요건

(1) 25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심사에 필요한 객실승무원 업무 경력 2년 이상과 객실승무원 학과·실기 교관 경력 3년 이상을 포함한 총 5년 이상의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심사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시 심사관은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심사관은 자신이 학과 및 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실습실, 자료열람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실기교육에 실제 항공기와 안전·비상장비를 사용할 것. 다만 실제 항공기와 안전·비상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받은 모형(Mock-up) 또는 모의장비 등의 훈련장비를 갖출 것

구분	훈련장비
안전 및 비상장비	다음의 각 장비
	가. 휴대용 소화기
	나. 도끼
	다. 방호장갑
	라. 스모크 고글
	마. 보호호흡장비(PBE)
	바. 휴대용 산소공급 장비(산소용기, 승객 좌석 마스크, 조종실 마스크, 전면형 마스크)
	사. 비상용 손전등
	아. 확성기
	자. 성인/아동 및 유아용 구명조끼 또는 기타 개인용 부양장비
	차. 구명정

	<u>카. 생존장비</u> <u>타. 휴대용 비상 위치신호 장비(비콘, 비상위치송신기, 무선위치 표지기)</u> <u>파. 어린이용 안전장치(CRS)</u> <u>하. 연장용 안전벨트</u> <u>거. 비치명적 구속장치</u> <u>너. 응급처치키트, 감염 예방키트 및 의료키트</u> <u>더.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관련장비(심폐소생술 마스크, 보호막, 소생용 백 등)</u> <u>러. 해당 운항환경에 적합한 기타장비(극지 운항 장비 등)</u>
<u>객실훈련장비</u>	실제 항공기에 설치된 장비와 기능·작동 측면에서 대표성을 갖는 다음의 구성을 갖춘 장비(모든 구성이 독립된 장비일 필요없이 훈련목적에 따라 단일 장비로 구현할 수 있다.) <u>가. 화장실</u> <u>나. 갤리</u> <u>다. 비상구 형태</u> <u>라. 객실승무원 좌석</u> <u>마. 승객 좌석 배열</u> <u>바. 객실승무원 패널</u> <u>사. 수하물 보관함</u>
<u>비상구 훈련장비</u>	실제 항공기의 비상구와 동일한 크기·중량·작동 특성을 재현하며 정상 및 비정상상황에서 실제 비상구와 동일한 방식 및 필요한 힘으로 작동 가능한 장비
<u>소방훈련장비</u>	실제 항공기에 설치된 소화 장비 및 고정 장치와 동일한 중량·치수·조작장치·유형·작동 특성을 재현한 다음의 구성을 갖춘 장비 <u>가. 좌석</u> <u>나. 갤리 장비</u> <u>다. 화장실</u> <u>라. 패널</u> <u>마. 수하물 보관함</u> <u>바. 폐기물 보관함</u>

수상생존 훈련 장비 및 시설	실제 항공기에 설치된 구명정과 동일한 중량·치수·외관·특징·작 동 특성을 재현한 구명정 등의 생존장비와 충분한 수심을 가진 수역 또는 수영장 다만, 전용 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사 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승무원 무력화 상황 훈련장비	실제 항공기에 설치된 장비와 동일한 중량·치수·외관·기능·작동 특성을 재현하고 조종실 좌석 작동, 안전벨트 작동, 조종실 산소 시스템 작동 기능을 포함한 장비

* 훈련장비가 실제 항공기의 특성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 훈련과정에서
실제 항공기와 훈련장비 간 차이점이 명확히 안내되어야 함
라. 교육평가방법

- 1) 학과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할 것
- 2) 실기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할 것
- 3)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것
- 4) 학과시험 범위는 제1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실기시험 범위는 제1호 가목 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사. 역량기반의 교육 및 평가(CBTA: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를 할 것

별표 12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3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1) 교육과목, 교육방법 또는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교관 확보 및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나)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이 훈련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 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3일
다.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2)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훈련한 경우 3)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3일
<u>라.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의2</u>	<u>업무정지 5일</u>
<u>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u>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3일

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u>바. 제48조제1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u>	<u>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의2</u>	<u>업무정지 3일</u>
<u>사.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u>	<u>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의3</u>	<u>지정 취소</u>
<u>아.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u>	<u>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의4</u>	<u>지정 취소</u>
<u>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u>	업무정지 10일
<u>차.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u>	<u>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의 2</u>	<u>업무정지 3일</u>
<u>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u> 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5)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u>법 제48조의4제1항제6호</u>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50일 업무정지 12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60일

6)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7)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8)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 경우		업무정지 20일
9)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일
10)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1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25일
1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20일
1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일
1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0일
<u>다.</u>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8조의4제1항제7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파.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8조의4제1항제8호	지정 취소
---------------------------------------	----------------	-------

비고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카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5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1. 구급용구

구 분	품 목	수 량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가. 수상비행기(수륙 양용 비행기를 포함한다)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 음성신호발생기 • 해상용 닻 • 일상용 닻	탑승자 한 명당 1개 1기 1개 1개	탑승자 한 명당 1개 1기 1개(해상이동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개
나. 육상비행기(수륙 양용 비행기를 포함한다) 1)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탑승자 한 명당 1개	탑승자 한 명당 1개

다음의 경우 가)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 아도 최저안전고도 이 상으로 비행하여 교체 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나)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 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u>육상단발비행기의 경우</u> <u>가) 해안으로부터 활공거 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 행하는 경우</u> <u>나) 이륙경로나 착륙접근 경로가 수상에서의 사고 시에 착수가 예 상되는 경우</u> 3) <u>2) 외의 육상비행기로서 이륙경로 또는 착륙접근 경로 상에서 사고 시 수 상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u>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탑승자 한 명당 1 개	탑승자 한 명당 1 개
다. <u>해상</u>을 비행하는 비행기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 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 구명보트	탑승자 한 명당 1 개 적정 척 수 1기	탑승자 한 명당 1 개 적정 척 수 1기

하는 다음의 경우 가) 쌍발비행기가 임계발 동기가 작동하지 않아 도 최저안전고도 이상 으로 비행하여 교체비 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나)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 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 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1) 외의 비행기가 30분 또는 185킬로미터(100해 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3) 비행기가 비상착륙에 적 합한 육지로부터 93킬로 미터(50해리) 이상의 해 상을 비행하는 경우 4)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로부터 단발기는 185킬 로미터(100해리), 다발기 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 하지 않아도 370킬로미 터(200해리) 이상의 해상	• 불꽃조난신호장 비 • 육상비행기 또는 수상비행기의 구 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품목 • 구명보트 • 불꽃조난신호장 비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 구명보트 • 불꽃조난신호장 비	육상비행기 또 는 수상비행기 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수량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	--	---	---	---	---

을 비행하는 경우 라.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 외딴지역 및 <u>해상</u> 등을 횡단 비행하는 비행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	• 불꽃조난신호장비 • 구명장비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마. <u>헬리콥터</u> 1) 제1종 또는 제2종 헬리콥터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u>10분거리를 초과하는</u>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2) 제3종 헬리콥터가 다음의 비행을 하는 경우 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자동회전 또는 안전착륙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나)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자동회전거리를 초과하되, <u>육지로부터 정상 순항속도로 3분 비행거리 이내</u>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헬리콥터 부양장치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 구명보트 • 불꽃조난신호장비 • 헬리콥터 부양장치 • <u>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u>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 구명보트 • <u>불꽃조난신호장비</u>	1조 <u>탑승자 한 명당 1개</u> 적정 척 수 1기 1조 <u>탑승자 한 명당 1개</u> <u>탑승자 한 명당 1개</u> 적정 척 수 1기	1조 <u>탑승자 한 명당 1개</u> 적정 척 수 1기 1조 <u>탑승자 한 명당 1개</u> <u>탑승자 한 명당 1개</u> 적정 척 수 1기

다) 나)에서 정한 지역을 초과하는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 <u>구명보트</u> • <u>불꽃조난신호장비</u>	탑승자 한 명당 1개 <u>적정 척 수 1기</u>	탑승자 한 명당 1개 <u>적정 척 수 1기</u>
3) 제2종 및 제3종 헬리콥터가 이륙 경로나 착륙점 근 경로가 수상에 서의 사고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	• 구명보트 • 불꽃조난신호장비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적정 척 수 1기 탑승자 한 명당 1개	적정 척 수 1기 탑승자 한 명당 1개
4) <u>연안 해역(offshore)에 위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이착륙, 인원·화물 수송 또는 항공작업 등을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u>	• 헬리콥터 부양장치 • <u>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u> • <u>구명보트</u> • <u>불꽃조난신호장비</u>	1조 <u>탑승자 한 명당 1개</u> <u>적정 척 수 1기</u>	1조 <u>탑승자 한 명당 1개</u> <u>적정 척 수 1기</u>
5) 산불진화 등에 사용되는 물을 담기 위해 수면위로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	탑승자 한 명당 1개	탑승자 한 명당 1개

별표 17의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헬리콥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하여 한 번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 데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양
- 2-1. 국외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여 실패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양
3. 표준대기 상태에서 교체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4.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별표 17의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헬리콥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하여 한 번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 데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양
- 2-1. 국외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여 실패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양
3. 표준대기 상태에서 교체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4.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양

별표 20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33조의2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해당 분야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처분내용					
		형식· 제한형 식· 제작증 명	지정된 전문교 육기관	항공교 통업무 증명	운항증 명	정비조 직인증	공항운 행증명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 템등을 승인 받은 경우	법 제58 조의2제1 항제1호	승인 취소					
나. 법 제58조제2항 또 는 제7항을 위반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58 조의2제1 항제2호	형식· 제한형 식· 제작증 명	지정된 전문교 육기관	항공교 통업무 증명	운항증 명	정비조 직인증	공항운 행증명
1) 항공안전관리시스 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효력정 지 7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7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7일
2)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 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 한 경우		효력정 지 7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7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7일
다.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법 제58 조의2제1 항제3호	효력정 지 7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7일	효력정 지 10일	효력정 지 7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33조의2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 제1호	승인 취소
나. 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효력정지 10일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효력정지 10일
다.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	효력정지 10일

별표 2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격 시”를 “항공기 식별·유도(이하 “요격”이라 한다)시”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1) 라) 및 마)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을 각각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하고, 같은 1) 바)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를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로, “항공교통관제기관에”를 “항공교통업무기관에”로 하며, 같은 1) 사)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를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

터”로, “항공교통관제기관에”를 “항공교통업무기관에”로 한다.

다) 비상주파수 121.5MHZ로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 관제기관과 교신을 시도하고 피요격항공기의 식별정보 및 비행상황을 알릴 것. 다만, 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비상주파수 243.0MHZ를 이용하여 교신을 다시 시도할 것

별표 26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격항공기와 통신이 이루어졌으나 통상의 언어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시는 다음과 같은 발음과 용어를 2회 연속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나) 피요격항공기가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PHRASE	PRONUNCIATION	MEANING
CALL SIGN (call sign)	KOL SA-IN (call sign)	My call sign is (call sign)
WILCO	VILL-KO	Understood Will comply
CAN NOT	KANN NOTT	Unable to comply
REPEAT	REE-PEET	Repeat your instruction
AM LOST	AM LOSST	Position unknown
MAYDAY	MAYDAY	I am in distress
HIJACK	HI-JACK	I have been hijacked
LAND (place name)	LAAND (place name)	I request to land at (place name)
DESCEND	DEE-SEND	I require descent

다) 요격항공기가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Phrase	Pronunciation	Meaning
CALL SIGN	KOL SA-IN	What is your call sign?
FOLLOW	FOL-LO	Follow me
DESCEND	DEE-SEND	Descend for landing

YOU LAND PROCEED	YOU LAAND PRO-SEED	Land at this aerodrome You may proceed
---------------------	-----------------------	---

별표 26 제3호나목2) 번호 1의 피요격항공기의 신호란 중 “이상 600미터”를 “초과 600미터”로, 같은 란 중 “이상 100미터”를 “초과 100미터”로 하고, 별표 26 제6호가목1) 중 “복장을 해야”를 “형광색의 식별용 조끼를 착용해야”로 한다.

별표 31에 제6의2호와 제6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 항제6호의2	증명취소
6의3. 법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 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 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86조제1 항제6호의3	증명취소

별표 3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종사자 훈련 운영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2 각 호에 따른 과정별 지정기준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33 마목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란 마목 중 “것”을 “것(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각 호에 따른 과정별 지정기준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더목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항공기 사용

사업란마목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훈련프로그램 평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각 호에서 정하는 과정별 지정기준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3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기준(제263조의2 관련)

1. 서류검사 기준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 업
	국제	국내	소형	
가.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체계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유지할 것	○	○	○	○
나.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Regulations Compliance Statement)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항공법규의 준수방법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증명서류로 확인시킬 수 있을 것	○	○	○	○
다. 항공기 또는 운항·정비와 관련된 시설·장비 등의 구매·계약 또는 임차 서류 신청자가 제시한 운항을 하는 데 필요한 항공기, 시설 및 업무 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	○
라.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및 실행을 증빙하는 서류 기초훈련, 비상절차훈련, 지상운항절차훈련,	○	○	○	○

비행훈련,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전환 및 승격훈련(Transition and Upgrade Training), 항공기차이점훈련(Differences Training), 보안훈련, 위험물취급훈련, 검열운항승무원/비행교관훈련, 객실승무원훈련, 운항관리사훈련 및 정비인력훈련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실행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각 호에 따른 과정별 지정기준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별표 36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범				
1) 운항일반교범(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	○	○	○
2) 항공기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	○	○	해당될 경우 적용 해당될 경우 적용
3)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	○	○	○
4) 훈련교범(Training Manual)	○	○	○	○
5)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	○	○	○
6) 노선지침서(Route Guide)	○	○	○	-
7)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	○	해당될 경우 적용 해당될 경우 적용	-
8) 위험물교범(Dangerous Goods Manual)	○	○	○	-
9)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	○	○	○
10)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	○	○	-
11)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	○	○	-
12) 객실승무원업무교범(Cabin Attendant Manual)	○	○	해당될 경우 적용	-
13)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	○	○	○

마. 별표 36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범

2) 항공기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3)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4) 훈련교범(Training Manual)

5)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6) 노선지침서(Route Guide)

7)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8) 위험물교범(Dangerous Goods Manual)

9)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10)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11)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12) 객실승무원업무교범(Cabin Attendant Manual)

13)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14)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	○	해당될 경우 적용 ○	해당될 경우 적용 -
15)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	○	○	-
바. 승객 브리핑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도울 수 없는 비상상황에서 승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승객의 재착석절차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	-
사. 급유·재급유·배유절차				
연료 주입과 배유 시 처리절차 및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	해당될 경우 적용
아. 비상구열 좌석(Exit Row Seating)절차				
비상상황 발생 시 객실승무원의 객실안전업무 보조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구열좌석의 배정방법 등의 절차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해당될 경우 적용	-
자. 약물 및 주류등 통제절차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수 있는 승무원의 약물 또는 주류등의 섭취를 방지할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을 것	○	○	○	○
차.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종사자 훈련에 관한 아웃소싱 등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방식과 조건 등 적절한 훈련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	○
카. 정비규정				
별표 37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	○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	○

2. 현장검사 기준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 업
	국제	국내	소형	

가.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장비 검사				
주 운항기지, 주 정비기지, 국내외 취항공항 및 교체공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하는 곳만 해당한다)의 지상시설·장비, 인력 및 훈련프로그램 등이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	○	○	○
나.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운항통제, 운항 감독방법, 운항관리사의 배치와 임무 배정 등이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	○	○	○
다.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정비방법·기준 및 검사절차 등이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	○	○	○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조종사·항공기관사·운항관리사 및 정비사의 자격증명 소지 등 자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	○	○	○
마. 훈련프로그램 평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각 호에서 정하는 과정별 지정기준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 훈련스케줄 및 교과목 등이 적절히 짜여져 있고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2) 운항승무원에 대한 훈련과정이 기초훈련, 비상절차훈련, 지상훈련, 비행훈련 및 항공기차이점훈련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짜여져 있고 자격을 갖춘 교관이 훈련시키고 있음을 증명할 것 3) 검열운항승무원 및 비행교관 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 것 4) 객실승무원 훈련과정이 기초훈련, 비상절차훈련 및 지상훈련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짜여	○	○	○	해당될 경우 적용

져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다만, 화물기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운항관리사의 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6) 위험물취급훈련 및 보안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7) 정비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 로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바. 기록 유지·관리 검사 1) 운항승무원 훈련, 비행시간·휴식시간, 자격 관리 등 운항 관련 기록이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항공기기록, 직원훈련, 자격관리 및 근무시간 제한 등 정비 관련 기록이 적절하게 관리·유 지되고 있을 것 3) 비행기록(Flight Records)이 적절하게 유지 되고 있을 것	○	○	○	○
사.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 뷰 검사관이 실시하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무작위 인터뷰 시 해당직무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지 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	○	○	○

별표 34 제2호에 포목부터 주목까지를 각각 누목부터 투목까지고 하고,
 같은 표에 포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u>포. 법 제90조의2제1항(법</u> <u>제96조제1항에서 준용</u> <u>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을 위반하여 운항증명</u> <u>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u> <u>아니하고 항공기를 운</u>	<u>법 제91조제1</u> <u>항제39호의3</u> <u>및 제95조제1</u> <u>항</u>	<u>운항증명</u> <u>취소</u>	<u>운항증명</u> <u>취소</u>	<u>운항증명</u> <u>취소</u>
--	--	--------------------------	--------------------------	--------------------------

<u>항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u>				
<u>호. 법 제90조의2제2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성 검사 결과 안전운항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u>	<u>법 제91조제1항제39호의4 및 제95조제1항</u>	<u>항공기 운항정지 30일</u>	<u>항공기 운항정지 30일</u>	<u>항공기 운항정지 30일</u>
<u>구. 법 제90조의3(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u>	<u>법 제91조제1항제39호의5 및 제95조제1항</u>	<u>운항증명 취소</u>	<u>운항증명 취소</u>	<u>운항증명 취소</u>

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 사업자만 해당한다)				
---	--	--	--	--

별표 36 제1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자가용조종사 과정,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용조종사과정, 같은 별표 제3호의2에 따른 운송용조종사과정,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조종사 형식 한정 과정, 같은 별표 제6호에 따른 계기비행증명과정 또는 같은 별표 제7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과정(자가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를 양성하는 경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과교육, 실기교육, 교관확보기준,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교육계획, 교육규정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7 제12호 내용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비 훈련 프로그램(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비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2 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3조제2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97조제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3	인증취소
3.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5호	인증취소
4.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6호	인증취소
5.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30조제3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6. 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업무정지(10일)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인증받은 범위 외의 다음의 정비등을 한 경우 1) 인증받은 정비능력을 초과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2) 인증받은 형식 외의 항공기등에 대한 정비등을 한 경우 3) 인증받은 장비품·부품 외의 장비품·부품의 정비등을 한 경우 나. 인증받은 정비시설 또는 정비건물 등의 위치	법 제98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7일)

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다. 인증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등을 한 경우 라. 인증받은 범위에서 정비등을 수행한 후 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마. 정비등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정비기록을 작성한 경우 바.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비방법·품질관리절차 및 수행목록 등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에 정비조직인 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5일) 업무정지(3일)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중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이 상인 경우 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다.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라.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마.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바.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아.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자.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180일) 업무정지(150일) 업무정지(120일) 업무정지(90일) 업무정지(60일)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20일) 업무정지(15일)

인 경우		
차.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90일)
카.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60일)
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30일)
파.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20일)
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10일)
비고 위 표의 제8호에 따른 정비등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등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정비등의 업무정지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9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자국에서 받은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법 제105조 제1항제8호	운항증명 승인취소 또는 효력 정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4까지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사 자격증명의 형식한정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자격증명의 한정 응시경력란 중 항공기 형식의 한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2 제5호에 따른 조종사 형식 한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내에 별표 12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소속 항공종사자의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6 및 별표 37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별표 12의 각 호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과 동등 이상의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사유	[] 신규 [] 변경 [] 분실 [] 훼손		
자격번호	재발급만 해당	연락처	자택
성명	한글		휴대폰
	영문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기입		
주소	한글		
	영문		
국적			
신청자격	[] 운송용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 항공정비사		
	[] 사업용조종사 [] 항공사 [] 운항관리사		
	[] 자가용조종사 [] 항공기관사		
	[] 부조종사 [] 항공교통관제사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영어능력등급	등급(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자만 기입		
학과시험	[] 합격 [] 불합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부여일	년 월 일		
실기시험	[] 합격 [] 불합격	최종응시일	년 월 일
추가발급	[] 전자문서		
선택사항	※ 폴리염화비닐(PVC) 카드로 기본 발급되며, 전자문서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		

「항공안전법」 제38조제5항·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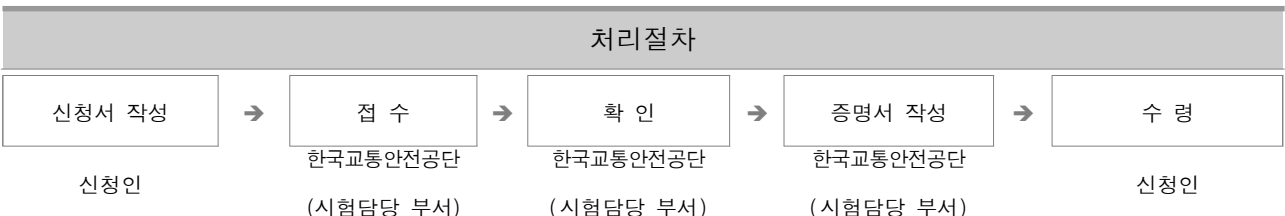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한함)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성명	한글	연락처	자택
	영문		휴대전화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기입		
주소	한글		
	영문		
국적			

갱신 자격증명	자격번호	면허증 발급일 (최신 갱신발급일)	
	자격종류	[] 운송용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 항공정비사 [] 사업용조종사 [] 항공사 [] 운항관리사 [] 자가용조종사 [] 항공기관사 [] 부조종사 [] 항공교통관제사	

갱신 요건	업무경력	기간	근무처(직위)	경력 분야
		~		
		~		
		~		
	교육훈련	교육명		
		교육일시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력				

「항공안전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에 대한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2. 갱신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크기가 3.5cm×4.5cm 일 것)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토 처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격증명 갱신 처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격증명 발급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연기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7일
성명	한글	연락처	자택
	영문		휴대전화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기입		
주소	한글		
	영문		
국적			
자격번호		면허증 발급일 (최근 갱신발급일)	
갱신 연기	신청	군복무[]	임산부[]
	사유	질병 또는 부상[]	
	연기		
	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예상종료일 년 월 일

「항공안전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대한 갱신발급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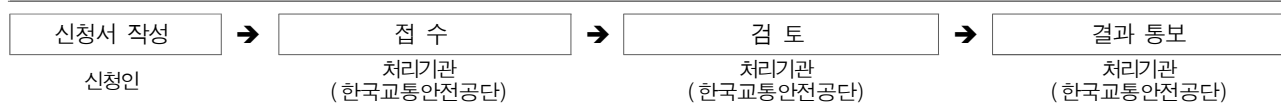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발급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자격증명 갱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자격증명 갱신 연기	1.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1.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통지서 등(군 복무를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모자보건수첩(출산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진단서(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연기 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 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증명		자격번호	
갱신기간			
「항공안전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갱신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유의사항			
갱신기간에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의 갱신기간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신규 ☐ 갱신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교육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교육과정명		
교육생의 정원		
교육기간		
현장확인 검사희망일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제4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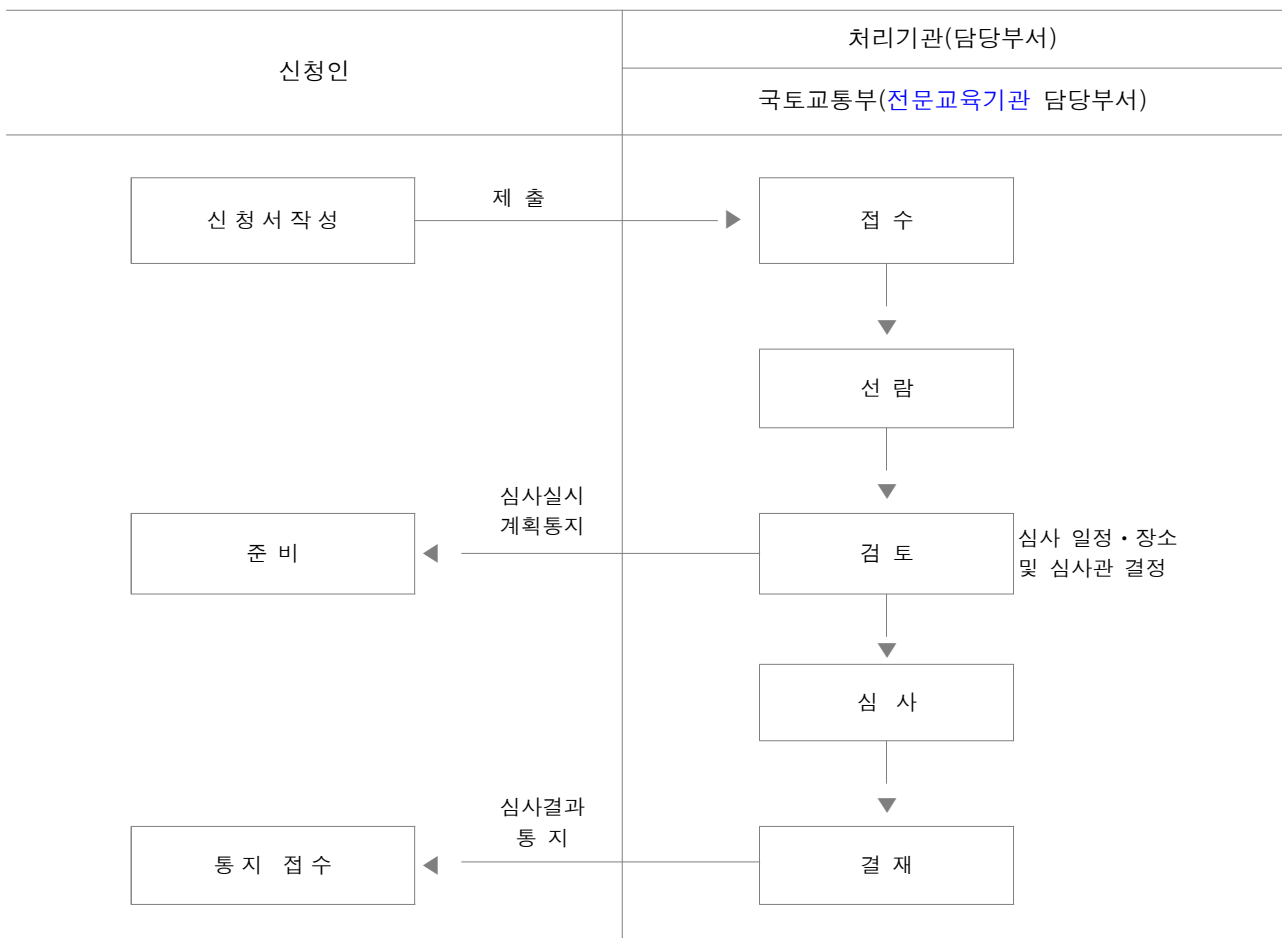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교육규정 1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규정을 생략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Certificate of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지정서 번호(Certificate No.) 최초 지정서 번호(Certificate No. of original issue)
① 설치자 (Name of Owner)		
②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Organization Name)		
③ 전문교육기관의 주소 (Organization Address)		
④ 교육과정명 (Training Course)		
⑤ 지정조건 (Terms of Approval)		
⑥ 유효기간 (Period of Validity)		
위 교육기관을 「항공안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 제10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of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48(3)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104(4) and 104-2(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Date of issue (0000.00.00 최초 지정일 Date of original Issu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훈련운영기준 Training Specifications					
발행기관 연락처(Issuing Authority Contact Details)					
전화 Telephone :		팩스 Fax :		이메일 E-mail :	
지정서 번호 Certificate No	교육기관 명칭 Organization Name	발행일자 Date	발행자 서명 Signature		
교육과정명 Training Course					
☐ 전문교육과정 Approved ☐ 본교 Main Campus ☐ 분교 Branch ☐ 원격지 Remote					
승인 · 허가사항 Specific Approval	승인 Yes	불승인 No	미적용 NA	세부사항 Description	비고 Remarks
교육 과정 Approved Training Course	[]	[]	[]		
교관의 인원 · 자격 및 교육평가 방법 Instructor Staffing, Qualifications, and Training Evaluation Methods	[] [] []	[] [] []	[] [] []		
훈련용 항공기의 지정에 관한 사항 Designation of Training Aircraft	[]	[]	[]		
정비방법에 관한 사항 Maintenance Procedures	[]	[]	[]		
항공교통관제시설에 관한 사항 ATC Facilities	[]	[]	[]		
교육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Training Records Management	[]	[]	[]		
전문교육기관 책임관리자 Accountable Manager of the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	[]	[]		
교육훈련 품질보증체계 Training Quality Assurance System	[]	[]	[]		
기타 Others	[]	[]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지정서 번호

Certificate No.: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훈련운영기준 Training Specifications

(전문교육기관명)

「항공안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담당부서장 (서명 또는 인)

적용일:

Effective date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교육기관	명칭	성명(대표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유 및 내용			

「항공안전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7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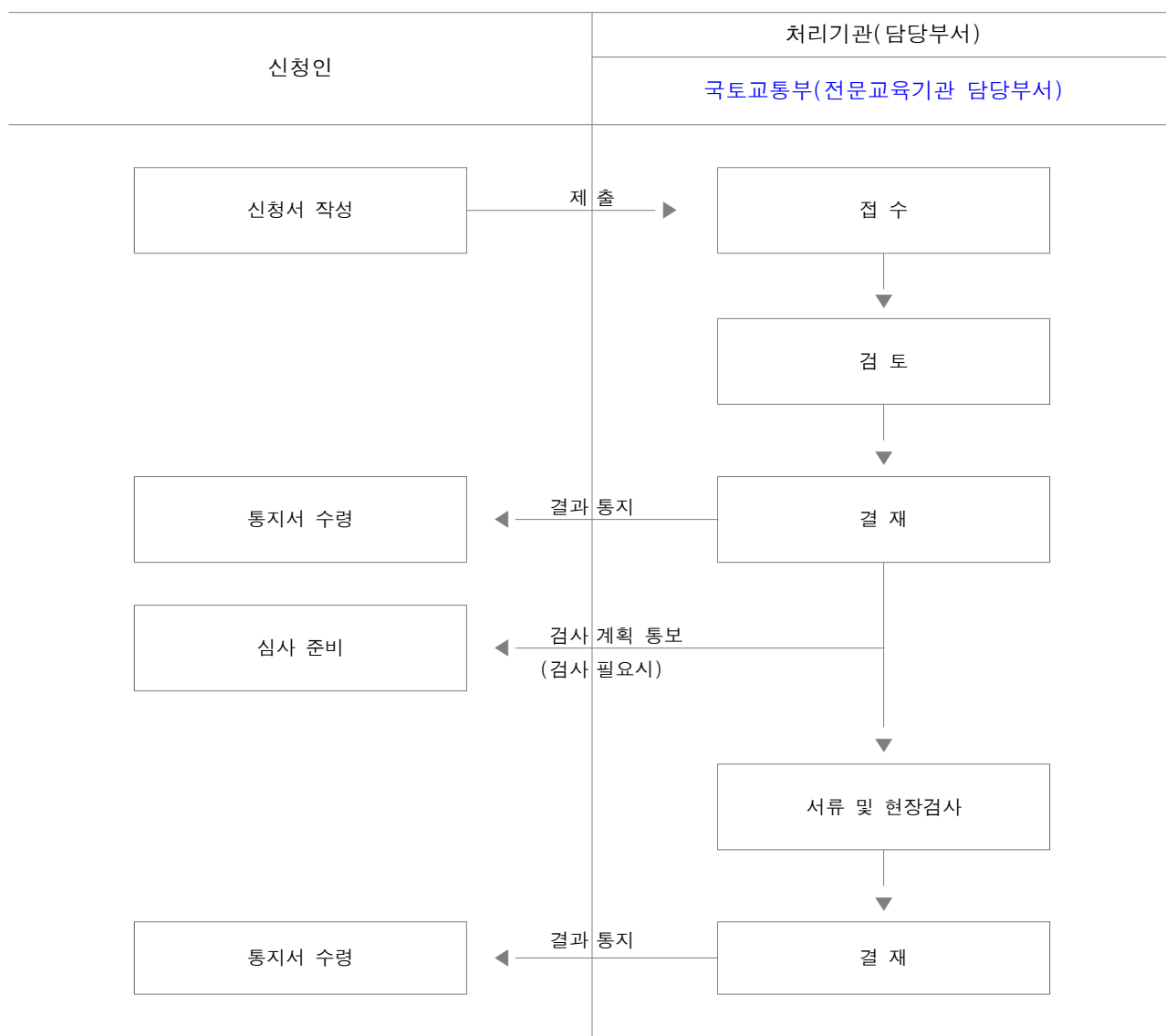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훈련운영기준 변경(안) 2.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구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 []
사업분야 (해당사업 분야 √표시, 복수 신청가능)	형식증명 []	제한형식증명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국외운항 항공기 []
	항공교통업무증명 []	공항운영증명 []
비고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 체운영절차 1부.	수수료(Fee)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승인번호 Certificate No.: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서 Certificate of approval, Safety Management Systems		
상호명(법인명) Name of Company		
성명(대표자) Name of Owner		
주소 Address		
구분 Type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Safety Management System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 [] Integrated Safety Managemnt System
사업분야 Service Area		
이 증명서는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of approval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s issued pursuant to Artical 58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130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또는 지방항공청장 직인 Administrator of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 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함.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spended or revoked.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승인번호			
구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 []	
사업분야 (해당사업 분야 √표시, 복수 신청가능)	형식증명 []	제한형식증명 []	제작증명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정비조직인증 []	
	항공기사용사업 []	국외운항 항공기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교통업무증명 []	공항운영증명 []	전문교육기관 []	
변경 신청 사유				
주요 변경 내용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규대조표 1부			수수료 없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신규, 갱신)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비행장시설의 소유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행장 자료	명칭				
	위치				
	표고 및 표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등록한 비행장 식별 코드				
	비행장 설치 허가일자				
	사용예정 항공기 기종				
항공교통업무 자료	운영 개시 예정일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종류				
	관할 구역 및 관제영역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필요시 추가자료 첨부)					

「항공안전법」 제85조(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9조제1항(제25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항공교통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	----------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교통업무증명서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e		증명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1. 항공교통관제기관명: Name of Air Traffic Control Unit	2. 항공교통관제기관 주소: ATS Unit Address	3. 운영자: Operator
4. 이 증명서는 「항공안전법」 제85조(제85조의2)에 따라 발급하며, 상기 운영자가 「항공안전법」 및 이에 관련된 모든 규정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규정상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을 허가함 This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85 (85-2) of the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thorizes the operator herein mentioned to operate the named Air Traffic Control Unit in so far as the operator complies with the foregoing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and conditions which are set out in the Operations Manual of Air Traffic Control Unit approved b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만료일: Expiration date 이 항공교통업무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일시 중지 또는 무효화, 대체, 반납하지 않는 한 위에 명시한 만료일까지 유효함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shall remain valid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specified above unless it is surrendered, superseded, suspended or revoked.		
6. 발급일: (최초 발행일:) Date of current Issue (Date of original issu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 리 기 간 90일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운항증명번호	(발급일자 : 년 월 일)	
유효성 검사결과 통보받은 일자	년 월 일 ※ 유효성 검사결과를 마지막으로 통보받은 일자를 기입합니다.	
사업종류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안전법」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2 제1항의 서류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에 대한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결과 통보서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검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의2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또는

지방항공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신규, 갱신)
Application for an AMO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5일	
신 청 인 (Applicant)	정비조직 명칭 Title of AMO			성명(대표자) Name(President)	
	주소 Address			전화(Tel):	
정비하고자 하는 범위 Ratings Applied for					
정비범위 설정사유 Reason for the Ratings					

「항공안전법」 제97조(제9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제272조의4)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고자(갱신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97-2)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1(272-4)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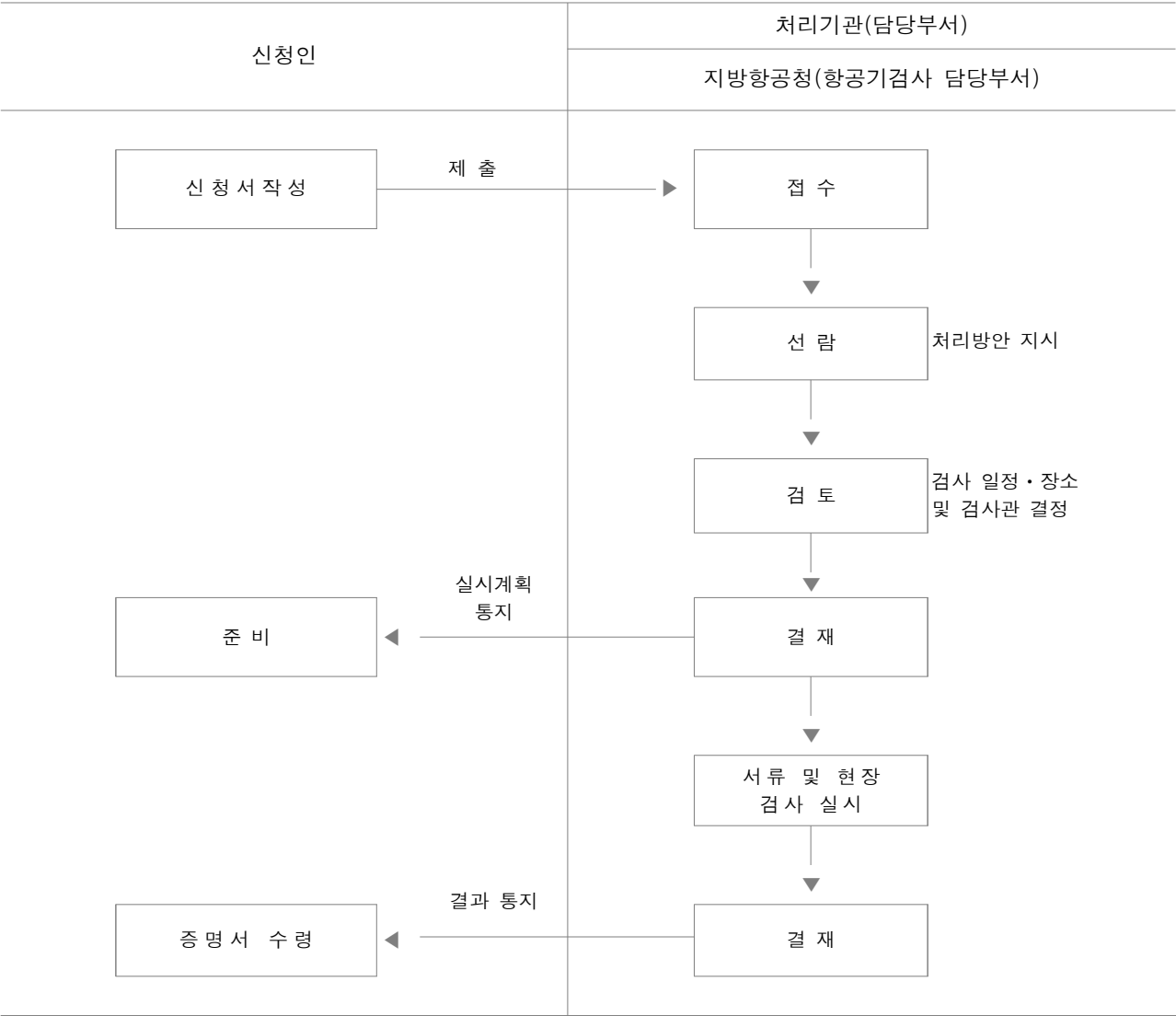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조직절차교범(copy of Maintenance Organization Procedure Manual). 다만,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비조직인증서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E

1. 인증서 번호:

Certificate Number

2. 사업자 명칭:

Title of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3. 사업자 주소:

Address

4. 본 증명서는 상기 정비조직인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7조(제9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2조(제272조의4)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인가된 정비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Upon finding that its organization complies in all respects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7 (97-2)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2(272-4)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and is empowered to operate 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with the Class and Rating Authorized

5. 정비시설의 위치: 정비조직절차교범 _____에 등재

Locations of maintenance facilities : As per _____ of the latest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s Procedures Manual.

6. 승인된 업무 범위 / Class and Rating Authorized

종류 CLASS	한정 RATING	제한사항 LIMITATION
항공기 Aircraft		
엔진 Engine		
부품 Component		
특수정비 Specialized maintenance		
<주기/note>		

이 승인된 업무 범위는 인가된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작업범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구된다.
This Class and Rating Authorized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approved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s Procedures Manual.

7. 만료일:

Expiration date:

이 정비조작인증서는 일시 자격정지 또는 무효화, 대체, 반납하지 않는 위에 명시한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shall remain valid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specified above unless it is surrendered, superseded, suspended or revoked

8. 발행일:

(최초발행일:)

Date of current issue:

(Date of original issue :)

9. 서명: _____ (발급 부서장)

Signature

지방항공청장

직인

Administrator of ○○ Regional Office of Aviation

정비조직인증 변경검사신청서

Application for inspection of changes to the AMO Certification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5일
신청인 Applicant	정비조직 명칭 Title of AMO	성명(대표자) Name(President)
	정비조직인증서 번호 Certificate Number	
	주소 Address	전화(Tel):
변경 내용 Changes		
변경 사유 Reason for changes		

「항공안전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2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변경검사를 받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4)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2-2(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submit this application for inspection of changes to the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ion, together with the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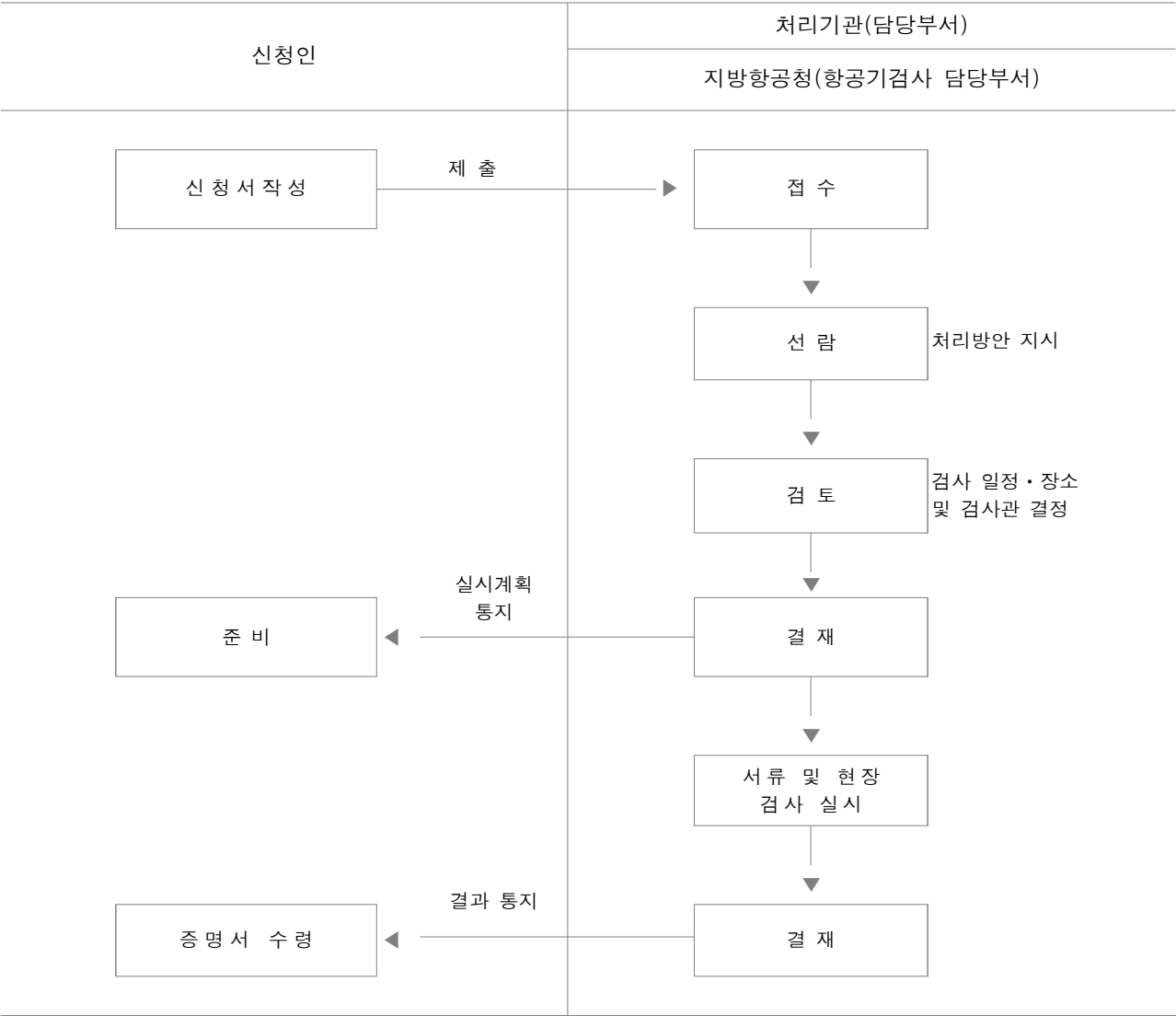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1. 변경된 세부 운영기준 2. 변경된 정비조직절차교범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교육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교육과정명		
교육생의 정원		
교육기간		
현장확인 검사희망일		

「항공안전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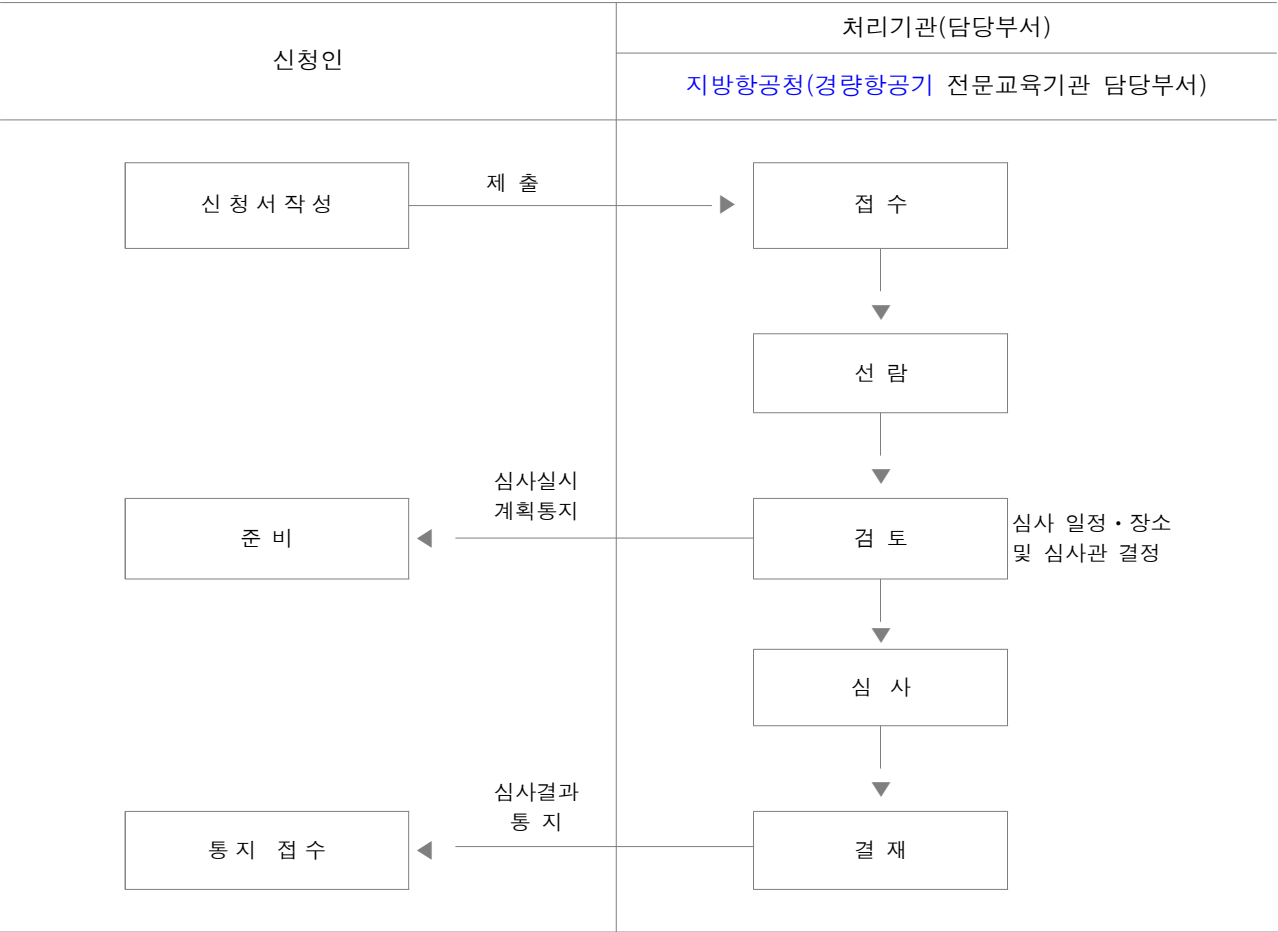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규정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설치자의 성명·주소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전문교육기관의 주소	
교육과정명	
지정조건	

위 교육기관을 「항공안전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항공청장



직인

대체안전수단 인정 신청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적용 분야 (해당분야 √ 표시, 복수 신청 가능)	형식증명	[]	자격증명	[]	전문교육기관	[]
	위험물	[]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	항공교통관제업무	[]
	항공교통업무증명	[]	운항증명	[]	기타	[]
비고						

「항공안전법」 제1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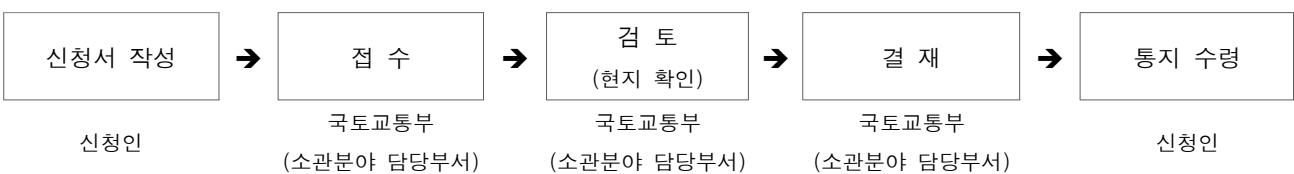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대체안전수단 적용 필요성 및 사유서 2. 적용 대상 기준 및 관련 법령 검토서 3. 대체방법·대체운영절차·대체시설 또는 장비에 관한 설명서 4. 위험도 평가서 5. 안전성 분석서 6. 위험도 경감조치 계획서 7.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서류 8. 비상대응 절차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검토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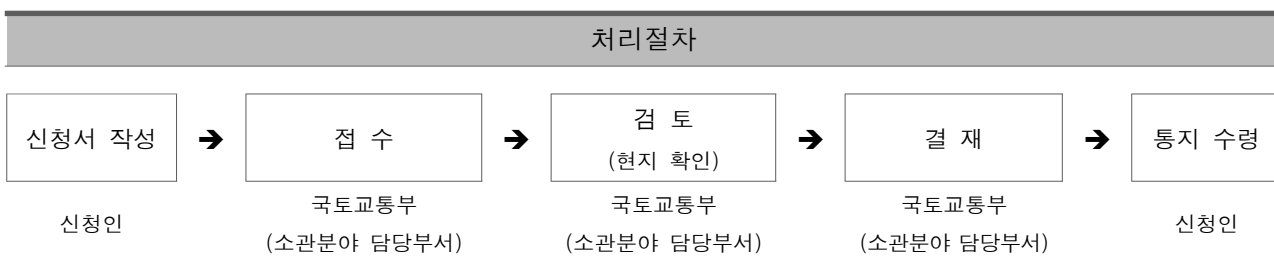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체안전수단 변경인정 신청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적용 분야 (해당분야 √ 표시, 복수 신청 가능)	형식증명 []	자격증명 []	전문교육기관 []
	위험물 []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	항공교통관제업무 []
	항공교통업무증명 []	운항증명 []	기타 []
변경 신청 사유			
주요 변경 내용	○ 적용범위, 운영절차, 적용시설 또는 장비,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성 분석의 주요 전제 조건 등 명시		
「항공안전법」 제1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안전수단의 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위험도 재평가서, 안전성 분석서 등) 2. 신·구 내용 대비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국제민간항공협약과의 관계) ①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다음 각 호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한다.</u> <u>1. 부속서 1, 2, 4, 5, 6, 7, 8, 11, 15, 18, 19</u> <u>2. 부속서 3, 10, 12, 13, 14 관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u> <u>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u>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2. (생 략) <u><신 설></u>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집한 난기류, 착빙 및 윈드시어 등 기상</u>

<신 설>

3. (생 략)

<신 설>

관한 자료

4.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항공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가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5조의2(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증명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신 설>

<신 설>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해야 한다.

제25조의3(형식증명 등의 취소 등
의 기준) 법 제20조제9항제4호
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
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
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
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
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제작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5
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

<신 설>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하는 사람) (생 략)	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증명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의4(제작증명의 취소 등의 기준) 법 제22조제7항제4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5조의3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하는 사람) ① (현행 제목 외의
---	---

<신 설>

제77조(비행경력 증명) ① 제76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③ (생략)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

⑨ (생략)

<신 설>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 ③

부분과 같음)

② 소유자등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 및 자격 인정·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77조(비행경력 증명)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조종에 따른 비행경력: 국방부장관이 증명한 것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별 업무 범위와 그 업무 수행 시의 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 ③

(생략)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④ -----

----- 전자문서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경험
이 있을 것

가.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90일 이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 이 경우 제91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

청장으로부터 지정(제91조 의3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도 포함한다)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라 한다)를 이용한 탑승경험도 해당 장치의 운용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법 제35조제5호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50시간 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 이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험도 해당 장치의 운용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 법 제35조제6호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 이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

한 탑승경험도 해당 장치
의 운용범위 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라. 법 제35조제7호 또는 제7
호의2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80일 이내에 60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험

마. 법 제35조제8호의 자격증
명을 받은 사람: 제69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험

바. 법 제35조제9호의 자격증
명을 받은 사람: 갱신을 신
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9
0일 이상 운항관리사의 업
무에 종사한 경험

2.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
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한국교
통안전공단에서 별표 6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이
와 동등한 교육훈련(법 제65
조제3항 또는 법 제83조제4항
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93

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운
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포함
된 교육훈련과 그 밖에 국토
교통부장관이 동등하다고 인
정한 교육훈련을 말한다)을
받았을 것

3.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
른 전문교육기관에서 별표 12
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교관
또는 실기시험관으로서의 자
격을 유지하고, 1개 이상의 교
육과정(갱신받으려는 자격증
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
다)에 교관 또는 시험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

② 자격증명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
료일 전 180일 이내에 별지 제4
1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③ 법 제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 서류로써 자격증명의 효력을 증빙할 수 있다. 다만, 그 유효기간은 가장 최근에 심사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경우

2.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의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경우

⑤ 자격증명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연기신청서에 제4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신 설>

경우 연기 신청은 신청자 본인
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⑥ 자격증명의 갱신을 연기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연기 사유
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받아야 한다.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
격증명의 갱신 또는 갱신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
신하여 발급하거나 갱신 연기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87조의3(자격증명의 효력의 회
복)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
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명을

갱신해야 한다.

1.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제82
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해당 자격증명의 종
류에 따른 과목 중 항공법규
만 해당한다)

2.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 제
82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해당 자격증명의 종
류에 따른 과목 중 항공법규
만 해당한다) 및 실기시험

②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후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사람
은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후 지체없이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신청해
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
신 신청을 받은 경우 제87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

<신 설>

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87조의4(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

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
사장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
료일 180일 전까지 자격증명 보
유자에게 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의4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
명 갱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한다. 다만, 갱신 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휴
대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 전자
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자격증명
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해
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
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통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
상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
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임시 자
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
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면제

가. ~ 다. (생략)

2. ~ 4. (생략)

② 법 제38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 면제(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 또는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1. -----
----- 일정기간에
한하여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4항제3호-----

에는 별표 7 제1호에 따라 실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③ (생략)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의 면제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날(항공기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③ ~ ⑤ (생 략)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
경력 인정) (생 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
경력 인정) ① (현행 항번호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형식한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지방항공청장이 지
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비행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항
공기로 비행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받으려는 형식한정 대상 항
공기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
에 대한 형식한정을 1개(별도
의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상 보유한 사람

2. 받으려는 형식한정 대상 항
공기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
2개 기종 이상에 대한 비행경
력이 총 1,000시간 이상인 사
람(헬리콥터의 경우 500시간
이상인 사람)

3. 받으려는 형식한정 대상 항
공기와 동일한 종류의 군용항

<신 설>

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경력
이 500시간 이상인 사람

제91조의5(자격증명서와 항공신
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법 제
39조의4에 따른 자격증명서(국
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
서도 인정한다)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의 소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운항승무원: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
니거나 항공기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
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및 항
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3.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제94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
기간 연장) ① 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
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
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
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
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
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신 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
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
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94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
기간 연장) ① -----

-----.

1.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
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
승무원은 3개월(다만, 1회에
한하여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1의2.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현행과 같음)

② -----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
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
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
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
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 ④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항공신체검사 관련 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의학보고서”
라 한다)

③ -----

의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

-----.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
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 없음

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단순 실수, 부지 등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상이 이 조항에 따른 최초 취소 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1년

2.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 없음

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단순 실수, 부지 등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

상자가 이 조항에 따른 최초 취소 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1년

3.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 없음

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단순 실수, 부지 등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상자가 이 조항에 따른 최초 취소 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1년

4. 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가. 시험 시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단순 소지한 경우(시험 답안 작성 등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

	<u>우에 한한다): 6개월</u> <u>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u> <u>한 경우: 6개월</u> <u>다. 응시원서 또는 신청서에</u> <u>기재된 내용에 사실과 다</u> <u>른 내용이 기입된 경우: 1</u> <u>년</u>
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 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u>한다</u>)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u>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u>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한다</u>)이 단독-----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 <u>전</u> <u>문교육기관</u> ----- -----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 6.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2. 훈련용 항공기의 지정 및 정
비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4. ~ 6.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
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
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

-----.

1. 교육과정(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과목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교육과정, 교육평가 및 확인
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자료, 시설, 장비
(항공기, 모의훈련장치 등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방
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를 포함한 조직체계, 교관 인
원·자격·역량 등에 관한 사
항

4. ~ 6. (현행과 같음)

④ -----

----- 전문교

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
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
s)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신 설>

육기관 -----

-- 발급해야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48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교
육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전문교
육기관 지정신청서(갱신)에 제1
04조제1항에 따른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의 교육규정을 계속 유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규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갱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체계가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교육
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자에게

제104조의2(지정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지정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

별지 제58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4조의3(지정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

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II) 1기 이상

가. (생략)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생략)

2. ~ 7. (생략)

② ~ ⑤ (생략)

제111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① (생략)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띠 외에 어깨끈을 장착해야

1. -----

가. (현행과 같음)

나. 2005년 11월 24일 -----

다.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운송사업용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교육·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 제3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
----- 탑재해야 --.

1. ~ 14. (현행과 같음)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신청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신청서-----

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및 승인기준
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용조직의 규모 및 업
무특성별 운용요건에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
3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 7. (생략)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
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생략)

<신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이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서를 발급해야 ---.

③ ----- 본문 및 법
제58조제7항 후단-----

1. ~ 7. (현행과 같음)

④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작·교육·운

<신 설>

<신 설>

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2. 제1호에 따른 해당 국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 사본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빙 서류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 및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0조의3(비행자료 수집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법 제5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

<신 설>

와 같다.

1. 항공기의 비행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 또는 항공기 데이터기록시스템(ADRS; Aircraft Data Recording System)을 장착할 것

2. 항공기에서 기록된 비행자료를 지상의 처리장치로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이 경우 전송 수단은 저장매체를 통한 물리적 전송방식 또는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송방식 등을 말한다.

3. 수집된 비행자료의 수신 및 저장, 분석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 분석 보고서 생성,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 등이 포함된 지상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

제130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 목표 및 조직체계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11항제1호-----

-----.

1. -----

-----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라. 항공안전 관련 법령 등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
보에 관한 사항

마. (생략)

2.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

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국
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증명, 인증, 승인, 지정 등
에 관한 사항

나. ~ 마. (생략)

3. 항공안전보증

가.·나. (생략)

<신설>

<신설>

4. 항공안전증진

가. 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마. (현행과 같음)

2.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
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
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
항

가.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안
전증명 -----

나. ~ 마. (현행과 같음)

3. 항공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
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
한 사항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정책·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기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 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의 항공당국 등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 ~ 마. (생략)

2. (생략)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능, 항공안전정책 및 목표를 항공업계 및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 내 항공안전 관련 부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및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 6. (현행과 같음)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제58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1. ----- 달성 목표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측정 및 모니터링-----

나. (생략)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5. (생략)

②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
과 같다.

<신설>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

나. (현행과 같음)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지
속적인 발전-----

4.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11항제2호에 따
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법
제58조제11항제4호에 따른 통
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 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운용
에 관한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제132조의2(외국의 법인 또는 단
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
한 인정 기준) 법 제58조제11항
제2호의2에 따른 인정 기준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구
성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Safety
Policy and Objectives)

2. 안전 위험 관리(Safety risk
management)

3. 안전 보증(Safety assurance)

4. 안전 증진(Safety promotion)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

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항) 법 제58조제11항제3호-----

-----.

제133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제135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 분석결과와 간행물 발간) ① 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른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분석 현황
2.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의 통계 및 추세 분석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3.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3.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4. 항공안전감독 결과 분석

5. 그 밖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은 관계 행정기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에게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 ----

-----.

1. ~ 2. (현행과 같음)

3.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항공기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

4. ~ 5. (생략)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① ~ ③ (생략)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앞지르기를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68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법 제67조에 따라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사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해야 한다.

1. ~ 3. (생략)

4. 앞지르기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할 것

도록 하고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4. ~ 5. (현행과 같음)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
----- 경우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며,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앞지르기 당하는 --.

제168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

-----.

1. ~ 3. (현행과 같음)

4. 앞지르기하려는 항공기는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제171조(항공기 등의 예항)

<신 설>

① (생략)

1. ~ 6. (생략)

② (생략)

제189조(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 신청) ① 제177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용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

아니 되며, 앞지르기 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우선 통행권이 있도록 충분히 분리되도록 진로를 변경할 것

제171조(항공기 등의 예항) ① 법제67조에 따라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를 예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조언 또는 허가에 따라 예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9조(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 신청) ①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

1. ~ 9. (현행과 같음)

② -----

<신 설>

2. 제1호 외의 자: 지방항공청장

제190조(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과 공중 대 지상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 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제190조(통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 가능한

모든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

설정을 시도해야 --. 이 경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

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

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

속 주시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 6. (생략)

제196조(요격) ① 법 제67조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邀擊)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6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 및 요격절차와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피요격(被邀擊)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6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그 국가의

----- 지역항법 -----

4. ~ 6. (현행과 같음)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식별·유도 조치 등에 대한 대응 절차)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법 제67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식별·유도 또는 착륙지시 등의 조치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6 제3호에서 정하는 시각신호, 통신절차 및 대응방식에 따라 즉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1. 식별·유도 항공기의 시각신호 또는 무선지시를 즉시 확인하고 이에 응답할 것
2.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것
3. 비상주파수 121.5메가헤르츠(MHz)를 이용(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43메가헤르츠(MHz)를 이용한다)하여 식별·유도 항공기 또는 관계기관과의 통신을 시도할 것
4. 트랜스폰더 SSR을 장착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Mode A Code 7700을 설정할 것
5.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또는 ADS-C)을 장착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비상기능을 설정할 것

<신 설>

제199조(최저비행고도) 법 제68조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

6. 시각신호, 무선지시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지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을 요청하면서 식별·유도 항공기의 지시에 따라 조치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각신호, 통신 절차 및 대응방식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에 따른다.

제199조(최저비행고도) 법 제68조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상의 사람 또는 재산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도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

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비행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6. ~ 18.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무인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의 조종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사본

나.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무인항공기 조종자격 증명서 사본

다.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
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무인
항공기 조종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
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법 제76
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53조(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실시하
는 정기검사는 연 1회를 실시한
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91조의5로 이동]

제253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
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85조제8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이상

2. 수시검사: 증명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3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갱신 등) ① 항공교통업무증명
을 받은 자가 법 제85조의2제2
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
무증명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
무증명(신규, 갱신) 신청서에 항
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 운영인력 및 시설·장비 현
황

3.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
통업무증명(신규, 갱신) 신청서
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법 제85
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제공체계가 항공교통업무증명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
합하다고 인정하면 항공교통업
무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86호
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제255조(항공정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2. ~ 4. (생략)

<신설>

<신설>

③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장애물도(Aerodrome Obstacle Chart)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255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형식-----.

1. 항공정보간행물(AIP), 이 경우 수정판 및 보충판을 포함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

6. 디지털 데이터세트

③ -----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의 종류는-----.

1.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

<u><신 설></u>	<u>rt-ICAO Type A)</u> 1의2. <u>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u>
<u><신 설></u>	1의3. <u>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u>
2. <u>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u>	2. <u>정밀접근지형도-ICAO(Precision Approach Terrain-ICAO)</u>
3. <u>항공로도(Enroute Chart)</u>	3. <u>항공로도-ICAO(Enroute Chart-ICAO)</u>
4. <u>지역도(Area Chart)</u>	4. <u>지역도-ICAO(Area Chart-ICAO)</u>
5. <u>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u>	5. <u>표준계기출발도-ICAO(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u>
6. <u>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u>	6. <u>표준계기도착도-ICAO(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u>
7. <u>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u>	7. <u>계기접근도-ICAO(Instrument Approach Chart-ICAO)</u>
8. <u>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u>	8. <u>시계접근도-ICAO(Visual Approach Chart-ICAO)</u>
9. <u>비행장 또는 헬기장도(Aerodrome Chart)</u>	9. <u>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 Type A)</u>

<u>rome/Heliport Chart)</u>	<u>AO(Aerodrome/Heliport Chart-ICAO)</u>
10. <u>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u>	10. <u>비행장지상이동도-ICAO(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u>
11. <u>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u>	11. <u>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ICAO(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u>
12. <u>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u>	12. <u>세계항공도-ICAO 1:1,000,000(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0,000)</u>
13. <u>항공도(Aeronautical Chart)</u>	13. <u>항공도-ICAO 1:500,000(Aeronautical Chart-ICAO 1:500,000)</u>
14. <u>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u>	14. <u>항법도-ICAO(소축척)(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u>
15. <u>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u>	15. <u>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u>
16. (생략) <u><신설></u>	16. (현행과 같음) <u>④ 영 제20조의2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국토지리정보원</u>

④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 정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1. (생략)

2. 시정(Visibility): 킬로미터(km) 또는 마일(SM). 이 경우 5 킬로미터 미만의 시정은 미터(m) 단위를 사용한다.

3. ~ 5. (생략)

<신설>

<신설>

2.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지도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자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된 항공정보·지도자료를 제공하거나 항공정보의 발간을 요청하는 자

⑤ 법 제89조제5항----- 항공 업무-----

-----.

1. (현행과 같음)

2. ----- 킬로미터(km).

-----.

3.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수집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의 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는 항공정보·지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규정, 규칙 및 절차
2. 비행장 및 헬기장
3. 구역
4. 항공교통서비스(ATS) 항공로
5. 계기비행절차
6. 항행안전시설
7. 장애물
8. 지형
9. 지리정보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제공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항공정보·지도 자료의 수집 양식, 속성, 품질 요건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제7항-----

-----.

<신 설>

<신 설>

제262조의2(운항증명의 지속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2조의 항공안전 활동으로 수집된 안전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등 긴급하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의 세부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63조의2(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

신청 등) ① 법 제90조의2 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

<신 설>

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
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
내에 유효성 검사계획을 수립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유효성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검사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
공청장은 유효성 검사 결과 제
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
사 결과를 별지 제95호의3서식
의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3조의3(위험도기반안전감독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4
에 따른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
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험도 분석을 위한 자료의

<신 설>

수집 및 관리

2. 감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그 밖에 시스템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안
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정
보의 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한다.

제272조의2(정비조직인증의 변경
검사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조직의 소재지 변경

2. 수행하려는 업무 범위의 추
가 또는 변경

3.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
nager)의 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신 설>

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9호의2서식의 정비조직인증 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세부 운영기준
2. 변경된 정비조직절차교범
3.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99호의2서식의 정비조직인증 변경검사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이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2조에 따라 발급한 세부 운영기준과 별지 제99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변경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72조의3(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등)

-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

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1년마다,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2년마다 검사. 다만,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갱신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갱신검사로 정기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2. 수시검사: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7조제6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2조의4(정비조직인증의 갱신

등)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적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부품등에 대한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제280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과 함께 별지 제99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80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
----- 법 제103조제7항 또는 법 제104조제4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281조의2(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거 안전감독 결과, 항공기 사고 및 안전장애 발생 현황, 국제 항공안전평가 결과 자료 등을 수집·분석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 설>

외국인국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수시검사의 횟수 및 점검 항목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수시검사의 횟수 및 점검 항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14조의2(항공안전감독관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질문 및 안전성검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

<신 설>

제316조(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

무원 중에서 항공안전 분야별로
항공안전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관의 항공안전 분야별 자격·경
력·교육훈련 및 그 밖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항공안
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314조의3(검사·질문의 대상 사
업장)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서 “그 밖의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1. 항공기의 보관·정비·점검
또는 주기를 위한 격납고(Han
gar)

2. 법 제13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시설

제316조(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

공중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의 통보(구두로 통보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

공중사자의 업무정지 등) ① --

----- 안전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 긴급성 및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

<삭 제>

<삭 제>

3. 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일시
운항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항공기, 경량항공
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재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재
운용이 가능함을 통보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통보(구두
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
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우선 구두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
다.

1. 운항·운용 또는 업무의 정
지 사유
2. 정지의 범위 및 대상
3. 이행하여야 할 안전조치
4. 조치의 해제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 설>

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운항·운용 또는 업무정지의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운항 또는 재운용이 가능함을 통보하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316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신청) ① 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4서식의 대체안전수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안전수단 적용 필요성 및 사유서

<신 설>

2. 적용 대상 기준 및 관련 법령
검토서

3. 대체방법 · 대체운영절차 · 대
체시설 또는 장비에 관한 설
명서

4. 위험도 평가서(Risk Assess
ment)

5. 안전성 분석서(Safety Case)

6. 위험도 경감조치 계획서

7.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
한 서류

8. 비상대응 절차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과의 차이점 검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전쟁, 감염병,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법 제1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
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16조의3(위험도 평가) ① 제31

<신 설>

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3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Hazard Identification)

2. 위험도의 분석

3. 위험도의 평가

4. 위험도 경감조치의 수립

5. 잔여 위험도(Residual Risk)의 평가

6.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 및 ICAO Doc 9859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원칙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 또는 이를 조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6조의4(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안전수단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 확보 여부

2. 위험도 평가 결과

3.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절성 및 실효성

4.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와의 정합성

5. 공공의 이익 및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존재 여부

7.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의 적정성

8. 국제민간항공기구 차이점 통보 필요 여부

9. 감독 가능성

10. 그 밖에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 확보 여부는 해당 기준의 안전목적 및 안전기능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신 설>

따른 심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 전문기관 또는 법률·항공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6조의5(대체안전수단의 인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1. 적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3. 운영제한에 관한 사항
4. 보고의무
5. 추가적인 안전조치

③ 대체안전수단의 유효기간은 대체안전수단의 적용 필요성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에 따른 국제

<신 설>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한 차이점 통보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316조의6(대체안전수단의 변경)

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대체안전수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23호의5서식의 대체안전수단 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구 내용 대비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16조의7(변경보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

<신 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운영환경의 중대한 변경
2. 위험 증가요인의 발생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의 발생
4. 제316조의5제2항에 따른 인정조건의 준수가 곤란한 상황의 발생

제316조의8(정기검사 등) ① 법 제132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도가 높은 경우
2.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3. 과거 검사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

오

2. 인정조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3.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국제기준 또는 국내 안전기
준이 변경된 경우

③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
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고 현장확인에 협조해야 한
다.

<신 설>

제316조의9(시정조치) ① 법 제13
2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시정조치를 받은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316조의10(대체안전수단 인정
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2조의2
제6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 인
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하
려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26
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신 설> 제31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앞서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6조의11(기록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검사, 시정조치 및 취소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현황을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1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26조제4항----- ----- ----- ----- -----.
--	---